

『훈민정음 법』 제정 촉구를 위한

학술토론회

2022년 12월 14일(수)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공동주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 사 **이용호**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주관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좌장 성기태 전)한국교통대학교 총장

발제자 **박재성**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진식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안남영 충북교육청 정책특별보좌관
장용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 대표

토론자 **권혁중** 전)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김건일 청주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남숙 전)용인특례시 4선의원
최홍길 서울선정고등학교 국어교사



후원

충청북도·정주시·충청북도교육청·영문봉양회·유네스코충북협회·(사)서계직지문화협회
(사)서계문지서예협회·(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다부성고미술전시관
청주대학교·청주학연구원·충북지역 개발회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www.honminjeongeum.kr



훈민정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학술토론회

- ◇ 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5:10 ~ 16:50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 ◇ 주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 사 이용호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
- ◇ 주관 :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 ◇ 후원 : (사)세계직지문화협회, (사)세계문자서예협회, 유네스코 충북협회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영릉봉양회,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청주대학교 청주학연구원, 충북지역개발회,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교육청,
- ◇ 토론회 진행 순서

내용	담당자	시간	
좌 장	성기태(전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15:10 ~ 15:12	2'
기조발제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차이에 관하여 박재성(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15:12 ~ 15:22	10'
발 표 1	훈민정음 창제 원리 김진식(충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15:22 ~ 15:32	10'
발 표 2	한글은 왜 어려울까 안남영(<까칠한 우리말> 저자)	15:32 ~ 15:42	10'
발 표 3	헌법상 문화 국가원리의 보장 장용근(홍익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교수)	15:42 ~ 15:52	10'
발 표 4	세종 창제의 훈민정음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한 소고 전병제(한얼경제사업연구원 대표)	15:52 ~ 16:02	10'
좌석정리	진행자 및 도우미	16:02 ~ 16:05	3'
토 론	권혁중(전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	16:05 ~ 16:12	7'
	김건일(청주여자고등학교 국어교사)	16:12 ~ 16:19	7'
	박남숙(훈민정음 해설사 전국모임 대표)	16:19 ~ 16:26	7'
	최홍길(서울선정고등학교 국어교사)	16:26 ~ 16:33	7'
질의답변	방청객 / 참석자	16:33 ~ 16:43	10'
종합정리	성기태(전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16:43 ~ 16:50	7'

훈민정음 법 제정 촉구를 위한
학 술 토 론 회

목 차

◆ 기초발표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비교 분석(박재성) ……	07
◆ 발 표 1 : 훈민정음 창제 원리(김진식) ……	29
◆ 발 표 2 : 한글은 왜 어려울까(안남영) ……	45
◆ 발 표 3 : 헌법상 문화 국가원리의 보장(장용근) ……	69
◆ 발 표 4 : 세종 창제의 훈민정음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한 소고(전병제) ……	83
◆ 토 론 문 : 한글은 하늘이 내린 하나의 글(최홍길) ……	94
◆ 부록 :	
1. 훈민정음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8대 중점사항 ……	97
2. 훈민정음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추진 방안 ……	98
3. 훈민정음 법 제정 촉구 이유 및 주요 내용 ……	99
4. (가칭)훈민정음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	101

[기조발표]

『세종실록』과 《훈민정음해례본》의 내용 차이에 관하여

박재성

교육학박사 / 명예효학박사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

一. 시작하며

「훈민정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어떤 표상(表象)을 떠올리게 될까? 가깝게는 서울시 용산에 있는 한글박물관에 진열된 한글 관련 각종 유물, 그리고 좀 더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UNESCO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주목을 받게 된 세계에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문자의 창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의 애민정신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여 개의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창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언제 창제하였는지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문자를 왜 창제하게 되었는지의 이유와 그 문자의 창제 원리를 기록해 놓은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점이다. 그 기록의 근거가 『세종실록』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훈민정음에 관한 기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중 다른 점을 살펴서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유물적 존재로서 위대한 문자라고만 규정되었을 뿐 한글이라는 현대의 문자체계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이를 위하여 제1장 ‘조선사회의 특징과 실록의 편찬’에서는 실록편찬의 과정

을 통해 실록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살펴보겠다. 제2장 ‘조선왕조실록 속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에서는 훈민정음의 어지와 정인지의 발문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겠다. 제3장 ‘세종실록의 기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차이’에서는 「훈민정음」의 어지와 정인지의 발문에 관한 두 기록물의 동일 내용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제4장은 이 글의 전체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여 훈민정음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간략하게 서술해 볼 것이다.

제1장 조선 사회의 특징과 실록의 편찬

조선은 문치주의 사회라고 정의한다. 문치주의(文治主義)란 무엇인가? 문인이 지배하는 사회다. 문치주의 체제하에서는 붓을 든 문사들이 고위 관료를 차지하여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였다. 따라서 기록이 매우 중시되었다. 문사들은 도포 자락에 항상 지필묵을 가지고 다녔다. 시상이 떠오르거나 기록할 것이 있으면 즉석에서 쓰기 위해서이다. 이미 어려서부터 글을 배웠고, 문장을 한문으로 썼다. 그래서 한문은 자연스럽게 문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일반 백성은 배우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배울 기회조차 쉽지 않았다. 이들 문인에게는 문(文)·사(史)·철(哲)이 중시되었다. 문학은 문명다운 삶을, 역사는 사례(事例)를, 철학은 도덕을 고취하기 위해서였다. 문인들은 모이면 운자(韻字)를 내어 시를 짓고, 사례에 따라 국가행사를 시행하며, 일생 성학(聖學)을 배우고 실천했다.

그런데 세종은 문치주의 사회로 출발한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다.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끌어가던 조선을 어리석은 백성들도 문자를 쓰는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이다. 문자를 알지 못한 백성을 ‘가엾게 여겨 새로 만든 스물여덟 자’의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실록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실록은 문서를 중시한 문치주의 사회가 낳은 대표적인 기록으로 역사가 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실록편찬은 단순한 역사 기록만이 아니라 왕권을 견제하려는 문사들의 의도가 숨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례로서 후대의 정치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오죽하면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늘과 역사뿐이라고 했겠는가? 그러나 하늘은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대상인 데 반해, 역사는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고 기록을 통해서 왕이 하늘의 뜻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왕의 언행을 기록해서 대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보다 역사가 더 두려운 것이다.

왕이 두려워하는 실록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같이 낱낱이 기록해 그 왕이 죽은 뒤에 편찬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록이나 실록에 쓰인 자료가 공개되면 실록의 기록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기록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다투는 과정에서 사단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록은 공개하지 않았고 왕도 볼 수 없게 한다는 명분으로 다음 왕대에 편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실록을 편찬하는 관원을 사관(史官)이라 한다. 사관 중 한 사람이 매일 조회를 비롯해 국왕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동참해 회의 내용과 왕이나 관료들의 발언,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기록했다. 이것을 사초(史草)라고 하는데 이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은 청요직¹⁾의 하나였기 때문에 젊고, 기개가 있고, 우수한 사람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었다. 문과에 급제해야 하고, 가문이 좋아야 하며, 재주(才)·학문(學)·식견(識)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했다. 이들 사관에게는 직필(直筆)이 생명이었다. 국왕이나 대신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직필했다. 따라서 대간의 탄핵과 사관의 직필은 조선 양반 관료제를 건강하게 운용하는 윤활유였다. 이렇게 편찬된 실록은 조선전기에 4 사고(四史庫:춘추관·충주·성주·전주)와 조선 후기에 5 사고(춘추관·정족산·적상산·태백산·오대산)에 보관했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888책, 1,893권이 전해 온다. 이 중 『세종실록²⁾』은 조선 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1973년

1) 조선 시대의 관직 직별 중 하나로 뜻 그대로 청렴해야 하는(淸) 중요한(要) 자리(職)라는 뜻이다.

2) 분량이 매우 방대해 처음에는 한 벌만 베껴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다. 그러다가 1466년(세조 12) 11월 17일 양성지의 건의로 『세종실록』에 이어 편찬된 『문종실록』과 함께 주자(鑄字)로 인출(印出)을 시작해 1472년(성종 3) 7월에 완료되었다. 이로써 『세종실록』이 최초로 간행되었으며, 이때 3부를 찍어냈다. 출판된 실록은 충주·전주·성주의 3 사고(史庫)에 1부씩을 보관되었고, 초본(草本)은 춘추관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다.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세종의 재위 기간인 1418년(세종 즉위) 8월부터 1450년(세종 32) 2월까지 세종의 재위 31년 7개월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 154책 163권으로 된 활자본으로, 본래 이름은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이다.

이 책의 편찬 작업은 문종(文宗) 대에 『고려사』(1451년)와 『고려사절요』(1452년)가 완성된 뒤 곧이어 시작되어 1452년(문종 2) 2월 22일에 왕명을 받아 황보 인·김종서·정인지 등이 총재관으로서 감수의 일을 맡았고, 재위 기간을 여섯으로 나누어 수찬하여 편찬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실록편찬에 참여했던 인물 중에 1453년(단종 1) 계유정난으로 황보 인·김종서 등이 피살되자, 정인지 혼자 감수하게 되었다. 또한, 6방의 책임 수찬관 가운데, 박중림이 1452년(문종 2) 6월에 사은사로 명나라에 파견되었으므로 최항이 이를 대신하였다.

이 밖에도 편수관으로 박팽년·어효첨·하위지·성삼문 등 4인과 기주관으로 신숙주 등 23인이 참여하였다. 『세종실록』의 수찬은 단종 원년 정월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그 뒤에도 감수 작업은 지속되어서 1454년(단종 2) 3월 30일, 단종에게 『세종실록』이 올려짐으로써 2년 1개월여에 달하는 편찬 작업이 완료되었다.

제2장 『조선왕조실록』 속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

1. 첫 번째 기록 : 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1443) 12월 30일 2번째 기사

[원문]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干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 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訓民正音.

[국역]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전자를 모방

而通，故智者^㉔不崇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以是解書，可以知其義；以是聽訟，可以得其情。字韻則清濁之能卞，樂歌則律呂之克諧，無所用而不備無所往而不達，雖風聲鶴唳雞鳴狗吠，皆可得而書矣。遂命詳加解釋，以喻諸人。於是，臣與集賢殿應教崔恒、副校理朴彭年、申叔舟、修撰成三問、敦寧注簿姜希顏、行集賢殿副修撰李塏、李善老等謹作諸解及例，以敘其梗概，庶使觀者不師而自悟。若其淵源精義之妙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恭惟我殿下天縱之聖，制度施爲，超越百王，正音之作，無所祖述，而成於自然，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而非人爲之私也？夫東方有國，不爲不久，而開物成務之大智，蓋有待於今日也歟！

[국역]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어제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字)를 만들었으니, ㉕**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할 뿐이다. ㄱ는 어금닛소리니 군(君)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규(虬)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ㅋ는 어금닛소리니 쾌(快)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ㅇ는 어금닛소리니 업(業)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ㄷ는 혀소리니 두(斗)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담(覃)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ㅌ는 혀소리니 탄(呑)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ㄴ는 혀소리니 나(那)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ㅂ는 입술소리니 별(譬)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보(步)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ㅍ는 입술소리니 표(漂)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ㅃ는 입술소리니 미(彌)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ㅆ는 잇소리니 즉(卽)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자(慈)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ㅈ는 잇소리니 침(侵)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ㅊ는 잇소리니 수(戍)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사(邪)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ㅎ는 목구멍소리니 읍(搨)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ㅎ는 목구멍소리니 허(虛)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은데 가로 나란히 붙여 쓰면 홍(洪)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ㅎ는 목구멍소리니 욕(欲)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ㄹ는 반설음(半舌音)이니 려(閤)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는 반치음(半齒音)이니 양(穰) 자의 처음 피어나는 소리와 같고, ˆ는 탄(呑)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一은 즉(卽)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는 침(侵)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ㄴ는 홍(洪)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ㅏ는 담(覃)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ㅓ는 군(君)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ㅕ는 업(業)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ㅠ는 욕(欲)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ㅑ는 양(穰)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ㅠ는 술(戌)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고, ㅋ는 별(馨) 자의 가운데소리와 같으며, 종성은 다시 초성으로 사용하며, 〇를 순음 밑에 연달아 쓰면 순경음이 되고, 초성을 합해 사용하려면 가로 나란히 붙여 쓰고, 종성도 같다. ˆ, 一, ㄴ, ㅓ, ㅕ, ㅠ는 초성의 밑에 붙여 쓰고, |, ㅕ, ㅑ, ㅑ, ㅋ는 오른쪽에 붙여 쓴다. 무릇 글자는 반드시 합하여 음을 이루게 되니, 왼쪽에 1점을 가하면 거성이 되고, 2점을 가하면 상성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 되고, 입성은 점을 가하는 것은 같되 촉급하게 된다.” 라고 하였다.

㉠예조판서 정인지의 서문에,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정을 통하여서, 삼재의 도리를 기재하여 뒤 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매 성기(聲氣)도 또한 따라 다르게 된다. 대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는 없으므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그 일용에 통하게 하니, 이것이 동근 장부가 네모진 구멍에 들어가 서로 어긋남과 같은데, 어찌 능히 통하여 막힘이 없겠는가. 요는 모두 각기 처지에 따라 편안하게 해야만 되고, 억지로 같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의 ㉠예악 문물(禮樂文物)이 중국에 견주되었으나 다만 방언과 이어만이 같지 않으므로, 글을 배우는 사람은 그 지취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옥사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로워하였다. 옛날에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를 만들어 관부와 민간에서 지금까지 이를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 글자를 빌려서 쓰기 때문에 혹은 간삽하고 혹은 질색하여, 다만 비루하여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이에서도 그 만분의 일도 통할 수가 없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의를 간략하게 들어 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

전을 모방하고, 소리로 인하여 음은 철조에 합하여 삼극의 뜻과 이기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써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㊸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으며, 이로써 송사를 청단 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 자운은 청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는 울려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갖추지 않은 적이 없으며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이든지,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상세히 해석을 가하여 여러 사람을 깨우치게 하라고 명하시니, 이에 신이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녕부 주부 강희안, 행 집현전 부수찬 이개 ·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범례를 지어 그 경계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연원의 정밀한 뜻의 오묘한 것은 신 등이 능히 발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 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히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한 사람의 사적인 업적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는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저.”하였다.

3. 세 번째 기록 : 세종실록 114권, 세종 28년(1446) 12월 26일 3번째 기사

[원문] ○傳旨吏曹 : 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竝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국역] 이조에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이과와 이전의 취재 때에는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험해 뽑게 하되, 비록 의리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합자하는 사람을 뽑게 하라.”고 하였다.

4. 네 번째 기록 : 세종실록 116권, 세종 29년(1447) 4월 20일 1번째 기사

[원문] ○辛亥/傳旨吏曹 : 正統九年閏七月教旨, 節該: “咸吉道子弟欲屬內侍茶房知印錄事者, 試《書》、算、律、《家禮》、《元》、《續六典》, 三才入格者取之。然吏科取才, 不必取俱入六才者, 但以分數多者取之。” 咸吉子弟三才之法, 與他道之人別無優異。 自今咸吉子弟試吏科者, 依他例試六才, 倍給分數。 後式年爲始, 先試《訓民正音》, 入格者許試他才, 各司吏典取才者, 竝試《訓民正音》。”

[국역] 이조에 전지하기를, “정통 9년 윤칠월의 교지 내용에, ‘함길도의 자제로서 내시·다방의 지인이나 녹사에 소속되고자 하는 자는 글씨·산술·법률·《가례》·《원육전》·《속육전》·삼재를 시행하여 입격한 자를 취재하라.’ 하였으나, 이과 시험으로 인재를 뽑는 데에 꼭 6가지 재주에 다 입격한 자만을 뽑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 다만 점수[分數]가 많은 자를 뽑을 것이며, 함길도 자제의 삼재 시험하는 법이 다른 도의 사람과 별로 우수하게 다른 것은 없으니,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음 식년부터 시작하되,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이과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 하였다.

5. 다섯 번째 기록 : 세종실록 117권, 세종 29년(1447) 9월 29일 2번째 기사

[원문] ○是月, 《東國正韻》成, 凡六卷, 命刊行。 集賢殿應教申叔舟奉教序曰:

(前略)³⁾ ~ 恭惟我主上殿下崇儒重道, 右文興化, 無所不用其極, 萬機之暇, 慨念及此, 爰命臣叔舟及守集賢殿直提學臣崔恒、守直集賢殿臣成三問、臣朴彭年、守集賢殿校理臣李愷、守吏曹正郎臣姜希顏、守兵曹正郎臣李賢老、守承文院校理臣曹變安、承文院副校理臣金曾, 旁採俗習, 博考傳籍, 本諸廣用之音, 協之古韻之切, 字母七音、清濁四聲, 靡不究其源委, 以復乎正。 臣等才識淺短, 學問孤陋, 奉承未達, 每煩指顧, 乃因古人編韻定母, 可併者併之, 可分者分之, 一併

3) 필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임(이후 동일 표기에 균일 적용).

一分、一聲一韻，皆稟宸斷，而亦各有考據。於是調以四聲，定爲九十一韻二十三母，以御製《訓民正音》定其音。又於質勿諸韻，以影補來，因俗歸正，舊習譌謬，至是而悉革矣。書成，賜名曰《東國正韻》，仍命臣叔舟爲序。(後略) ~ 4)

[국역] 이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니 모두 6권인데, 명하여 간행하였다. 집현전 응교 신숙주가 교지를 받들어 서문을 지었는데, 이르기를,

“(전략) ~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옵서 유교를 숭상하시고 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문학을 힘쓰고 교화를 일으킴에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사온데, 만기를 살피시는 여가에 이일에 생각을 두시와, 이에 신 신숙주와 수 집현전 직제학 신 최항, 수 직 집현전 신 성삼문 · 신 박팽년, 수 집현전 교리 신 이개, 수 이조 정랑 신 강희안, 수 병조 정랑 신 이현로, 수 승문원 교리 신 조변안, 승문원 부교리 신 김증에게 명하시와 세속의 습관을 두루 채집하고 전해 오는 문적을 널리 상고하여, 널리 쓰이는 음에 기본을 두고 옛 음운의 반절법에 맞추어서 자모의 칠음과 청탁과 사성을 근원의 위세한 것까지 연구하지 아니함이 없이 하여 옳은 길로 바로잡게 하셨사온데, 신들이 재주와 학식이 얇고 짧으며 학문 공부가 좁고 비루하매, 뜻을 받들기에 미달하와 매번 지시하심과 돌보심을 번거로이 하게 되겠삽기에, 이에 옛사람의 편성한 음운과 제정한 자모를 가지고 합쳐야 할 것은 합치고 나눠야 할 것은 나누되, 하나의 합침과 하나의 나눔이나 한 성음과 한 자운마다 모두 위에 결재를 받고, 또한 각각 고증과 빙거를 두어서, 이에 사성으로써 조절하여 91운과 23 자모를 정하여서 어제하신 《훈민정음》으로 그 음을 정하고, 또 ‘질(質)’ · ‘물(勿)’ 둘의 운(韻)은 ‘영(影)’으로써 ‘래(來)’를 기워서 속음을 따르면서 바른 음에 맞게 하니, 옛 습관의 그릇됨이 이에 이르러 모두 고쳐진지라, 글이 완성되매 이름을 하사하시기를, ‘《동국정운》’이라 하시고, 인하여 신(臣) 숙주에게 명하시어 서문을 지으라 하셨다. (후략) ~ ”하였다.

6. 여섯 번째 기록 :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1460) 5월 28일 2번째 기사

[원문] ○禮曹啓: “《訓民正音》, 先王御製之書, 《東國正韻》、《洪武正韻》, 皆先

4) 필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임(이후 동일 표기에 균일 적용).

王撰定之書；吏文又切於事大，請自今文科初場試講三書，依四書、五經例給分，終場并試吏文，依對策例給分。”從之。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훈민정음》은 선왕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홍무정운》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하신 책이요, 이문도 또 사대에 절실히 필요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문과 초장에서 책 세 권을 강하고 사서·오경의 예에 의하여 분수를 주며, 종장에서 아울러 이문도 시험하고 대책의 예에 의하여 분수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 일곱 번째 기록 : 세조실록 21권, 세조 6년(1460) 9월 17일 2번째 기사

[원문] ○禮曹啓 : (前略) ~ 每當式年講經時, 講四書, 并試《訓民正音》、《東國正韻》、《洪武正韻》、吏文, 且五經諸史, (後略) ~ 。從之。

[국역]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략) ~ 매 식년의 강경할 때를 당하거든 4서를 강하고, 아울러 《훈민정음》·《동국정운》·《홍무정운》·이문과 또 5경·여러 사서를 시험하되 (후략) ~ ” 하니, 그대로 따랐다.

8. 여덟 번째 기록 :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1464) 9월 21일 2번째 기사

[원문] ○禮曹參定成均館九齋之法啓 : "每季月禮曹堂上臺省官會成均館講三處, 句讀精熟, 義理旁通, 十分盡頭者升次齋, 稱某齋生, 至易齋三通者, 每式年直赴會試。 又於式年講舉子四書三經, 自願講他經者及欲講《左傳》、《綱目》、《宋元節要》、《歷代兵要》、《訓民正音》、《東國正音》者聽。

[국역] 예조에서 성균관의 구재의 법을 참정하고 아뢰기를, “매 계절에 예조 당상과 대성관이 성균관에 모여서 세 곳을 강하여 귀독에 정하게 익숙하고 의리에 널리 통하여 10품이 다 첫째 자리에 있는 자를 다음 재로 올리고, 아무 재의 생도라고 칭하게 하고, 역재에 이르거든 3번 통하는 자는 매 식년에 바로 회시에 나가게 하소서. 또 식년에 거자에게 사서·삼경을 강하게 할 때 다

른 경서를 강하고자 자원하는 자와, 《좌전》·《강목》·《송원절요》·《역대병요》·《훈민정음》·《동국정음》을 강하고자 하는 자도 들어주소서.”하였다.

9. 아홉 번째 기록 : 성종실록 138권, 성종 13년(1482) 2월 13일 6번째 기사

[원문] ○南原君 梁誠之上疏曰 : (前略) ~ 一, 臣竊惟書籍, 不可不深藏, 以備萬世也。 如《三國史記》、《東國史略》、《高麗全史》、《高麗史節要》、《高麗史全文》、《三國史節要》、本朝歷代《實錄》、《統筒謄錄》、《八道地理誌》、《訓民正音》、《東國正韻》、《東國文鑑》、《東文選》、《三韓龜鑑》、《東國勝覽》、《承文謄錄》、《經國大典》、《京外戶籍》、《京外軍籍》、諸道田籍、貢案橫看、諸司·諸邑奴婢正案·續案, 各備四件外, 三史庫不緊雜書, 竝皆刷出, 又緊關書籍, 春秋館及三史庫, 各藏一件, 永傳萬世, 幸甚。(後略) ~

[국역] 남원군 양성지가 상소하기를, "(전략) ~ 1. 신이 그옥이 생각하건대 서적을 깊이 수장하여서 만세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삼국사기》·《동국사략》·《고려전사》·《고려사절요》·《고려사전문》·《삼국사절요》와 본조 역대의 《실록》, 그리고 《총통등록》·《팔도지리지》·《훈민정음》·《동국정운》·《동국문감》·《동문선》·《삼한귀감》·《동국여지승람》·《승문등록》·《경국대전》·《경외호적》·《경외군적》과 제도의 전적·공안·황간, 그리고 제사·제읍의 노비에 대한 정안·속안 등을 각각 네 건씩 갖추게 하는 외에 세 곳의 사고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잡서들까지 모두 다 인쇄하게 하며, 또한 긴요한 서적들은 추춘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건씩 수장하여 길이 만세에까지 전하게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 (후략)"하였다.

10. 열 번째 기록 : 정조실록 16권, 정조 7년(14) 7월 18일 2번째 기사

[원문] ○大司憲洪良浩上疏曰 : (前略) ~ 六曰肄華語。夫漢人之語, 卽中華之正音也。一自晋代以後, 五胡交亂, 方言屢變, 字音亦僞而猶可因其似而求其眞矣。我國之音, 最近於中國。而羅、麗以來, 旣無翻解之方, 每患通習之難。惟我世宗大王, 睿智出天, 獨運神機, 創造訓民正音, 質諸華人, 曲盡微妙”(後略) ~。

[국역] 대사헌 홍양호가 상소하기를, "(전략) ~ 여섯째는, 화어를 익혀야 하는 일을 말하겠습니다. 대저 한인들의 말은 곧 중화의 정음입니다. 한번 진나라 시대에 오호들이 서로 어지럽힌 이후부터는 방언이 자주 변하게 되고 자음도 또한 위작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유사한 것에 따라 진짜 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음은 가장 중국의 것에 가까웠었는데, 신라와 고려 이래에 이미 변해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매양 통습하는 어려움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오직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낸 예지로 혼자서 신기를 운용하여 창조하신 훈민정음은 화인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꼭진하고 미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후략) ~"하였다.

제3장 『세종실록』의 기록과 《훈민정음해례본》의 차이

※ 필자가 2021년 4월 28일(수) 위의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2021년 6월 8일(화) 문화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2021년 6월 14일(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답변 없는 것을 예를 들어서 기술함.

1. ㉠ ‘欲使人易習’과 ‘人人易習’

【훈정회의 질문】 ‘人’ 과 ‘易’의 한자 출입이 다른 문제 지적

【문화재청 답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음. 『세종실록』에서의 간결성이 강조된 사례에 해당함.

【훈정회의 재질문】

○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1446)년 9월 29일 갑오 4번째 기사의 ‘人’과 해례본의 ‘人人’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고, 세종실록에서의 간결성이 강조된 사례에 해당한다면 ‘人人’이 기록된 조선왕조실록 총 1,792회를 시대별로 예시하면 다

5) 제2장 『조선왕조실록』 속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 : 2. 두 번째 기록(세종실록 113권 4번째 기사) 참조. 본서 11쪽


음과 같은데, 이것은 간결성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
2	2	41	96	13	9	33	7	209	58	276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4	82	212	193	79	53	56	80	7	67	135

순조	헌종	철종	고종
33	2	2	414

○ 또한, 한자에서는 大와 犬, 土와 土, 夭와 天, 干과 千 등과 같이 점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와 획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글자가 되듯이,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1446)년 9월 29일 갑오 4번째 기사에 ○ 안의 표시된 글자 易가 해례본의 ○ 안의 표시된 글자 易와 같은 글자인지 규명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것임.

세종 실록 기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易 《康熙字典》 【辰集上】【日】 易康熙筆画：9 部外筆画：5 <input type="checkbox"/></p> <p>易 <small>【唐韻】與章切【集韻】余章切【正韻】移章切，怱音陽。【說文】開也。从日一勿。一曰飛揚。一曰長也。一曰彊者，衆貌。</small></p> <p>又【佩觿集】光也。</p> <p>又【前溪地理志】交趾郡曲易縣。【師古註】易，古陽字。</p> <p>© 漢典</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易 《說文解字》 【卷九】【勿】 <input type="checkbox"/></p> <p>【說文解字】</p> <p>易</p> <p>開也。从日一勿。一曰飛揚。一曰長也。一曰彊者衆貌。與章切文二 重一</p> <p>【說文解字注】</p> <p>(易)開也。此陰陽正字也。陰陽行而會易廢矣。闕戶謂之乾。故曰開也。从日一勿。从勿者、取開展意。與章切。十部。一曰飛揚。一曰長也。一曰彊者衆貌。</p> <p>© 漢典</p> </div>	
<p>易에 대해서 《강희자전》의 【사고주】에 풀이하기를 易은 陽(별 양)의 古字라고 하였고, 또한 《설문해자》도 ‘연다(開)는 뜻이고, 음양(陰陽)의 바른 글자(正字)라고 풀이함.</p>		



易 《康熙字典》 【辰集上】【日】易 康熙筆画：8 部外筆画：4

易 【唐韻】羊益切【集韻】【韻會】【正韻】夷益切，从音亦。【說文】蜥易，蜥蜴，守宮也。象形。祕書說：日月爲易，象陰陽也。【易·繫辭】《易》者，象也。【疏】《易》卦者，爲萬物之形象。【又】生生之謂易。【註】陰陽轉易，以成化生。【疏】陰陽變轉。【周禮·春官·大卜】掌三《易》之灋：一曰《連山》，二曰《歸藏》，三曰《周易》。【註】易者，揲著變易之數，可占者也。【孔穎達·周易正義】夫易者，變化之總名，改換之殊稱。【朱子·周易本義】《易》，書名也。其卦本伏羲所畫，有交易、變易之義，故謂之《易》。

易 《說文解字》 【卷九】【易】

【說文解字】

易

蜥易，蜥蜴，守宮也，象形。《祕書》說：日月爲易，象陰陽也。一曰从勿。凡易之屬皆从易。羊益切文一

【說文解字注】

易 《易》**蜥易、蜥蜴、守宮也。**虫部蜥下曰。蜥易也。蜥下曰。在壁曰蜥蜴。在坤曰蜥易。釋魚曰。榮蜥。蜥蜴。蜥蜴。蜥蜴。守宮也。郭云。轉相解。博異語。別四名也。方言曰。守宮。秦晉西夏謂之守宮。或謂之蠪。或謂之蜥蜴。其在澤中者謂之易蜥。南楚謂之蛇龜。或謂之蜥蜴。東齊海岱謂之蜥。北燕謂之祝蜥。桂林之中守宮大者而能則。謂之蛤蜊。按許舉其三者。略也。易本蜥易。語言假借而難易之義出焉。鄭氏雖易曰。易之爲名也。一言而兩義。簡易一也。變易二也。不易三也。按易景二字皆古以語言假借立名。如象即像似之像也。故許先言本義。而後引祕書說。云祕書者。明其未必然也。**象形。**上象首。下象四足。尾甚微。故不象。羊益切。十六部。古無去入之分。亦以駁切。今俗書蜥易字多作蠪。非也。按方言。蜥易。其在澤中者謂之易蜥。郭云。蠪音析。是可知蠪即蜥字。非羊益切。小雅。胡爲虺蜥。毛傳曰。蠪。蜥也。釋文。蠪星歷反。字又作蜥。說文引詩正作蜥。毛詁正與方言合。方言。易蜥。南楚謂之蛇龜。或謂之蜥蜴。謂在澤中者也。鄭即虫部之蜥字。蛇龜也。陸璣云。蠪一名蜥蜴。水蠪也。或謂之蛇龜。如蜥易。然則蜥易者統名。倒言易蜥及單言蜥者。別其在澤中者言也。**祕書說曰。日月爲易。**祕書謂緯書。目部亦云。祕書韻从戊。按參同契曰。日月爲易。剛柔相宣。陸氏德明引虞翻注參同契云。字从日下月。**象雲易也。**謂上从日象陽。下从月象陰。緯書說字多言形而非其義。此雖近理。要非六書之本。然下體亦非月也。**一曰从勿。**又一說从旗勿之勿。皆字形之別說也。**凡易之屬皆从易。**

易에 대해서 《강희자전》은 《易》 즉 서책의 이름이라고 하였고, 또한 《설문해자》는 ‘<비서>의 설명에서 일월이 바뀌게 되면 음양의 상이 된다’라고 함.

2. ㉞) ‘禮曹判書’와 ‘禮曹判書’

【훈정회의 질문】 예조판서의 ‘曹’ 와 ‘曹’의 한자 출입이 다른 문제 지적

【문화재청 답변】 『조선왕조실록』에서는 ‘曹’와 ‘曹’의 한자를 혼용하였으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음.

【훈정회의 재질문】 6조 판서인 예조, 형조, 이조, 병조, 공조, 호조에서 六曹의 ‘曹’라는 한자가, 해례본에서만 ‘禮曹判書’라고 되어 있음을 지적한 것임. 즉, 曹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성씨 조’로 曹操와 曹晚植이 다른 성씨일진데, <해례본>의 ‘禮曹判書’와 『세종실록』의 ‘禮曹判書’가 동일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구함. 더욱이 『조선왕조실록』 그 어디에도 六曹를 기록하면서 曹자를 기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을 구함.

6) 제2장 『조선왕조실록』 속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 : 2. 두 번째 기록(세종실록 113권 4번째 기사) 참조. 본서 11쪽

<p>▲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p>	<p>▲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4번째기사</p>

3. ㉞) ‘禮樂文物’과 ‘禮章文物’

【훈정회의 질문】 ‘禮樂文物’과 ‘禮章文物’의 기록이 다른 문체 지적

【문화재청 답변】 편찬 과정에서 글자의出入이 일부 다르게 나타날 뿐 내용상의 오류로 보이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훈정회의 재질문】

○ 『조선왕조실록』의 전체에 ‘예악문물(禮樂文物)’과 ‘예악문장(禮樂文章)’의 사용 빈도수가 아래와 같으며, 문맥상 쓰임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데, 『세종실록』의 ‘예악문물’과 <해례본>의 ‘예악문장’이 과연 같은 의미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견을 구함.

7) 제2장 『조선왕조실록』 속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 : 2. 두 번째 기록(세종실록 113권 4번째 기사) 참조. 본서 11쪽

○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1446)년 9월 29일 훈민정음 기사의 ‘禮樂文物’와 해례본의 ‘禮樂文章’

• 禮樂文物(『조선왕조실록』 총 7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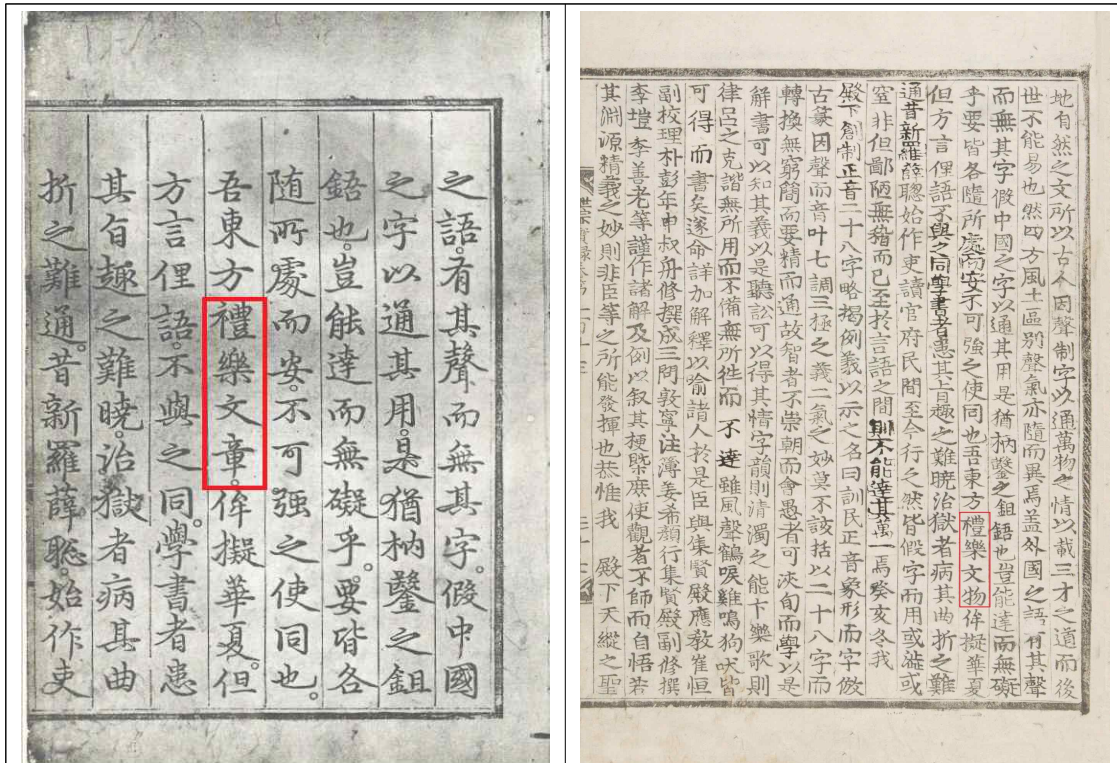
예법과 음악과 문화의 산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예법, 음악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따위의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禮樂文章(『조선왕조실록』 총 3회) 한 나라의 문명을 이룬 예악(禮樂)과 제도. 또는 그것을 적어 놓은 글.

내 용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예악문물	1	1	3	19	1		3		9	3
예악문장			1						1	

내 용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예악문물	19		4	7	3	2			2	
예악문장									1	

내 용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예악문물	7	8	2			11
예악문장						



▲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4번째기사

4. ㉞⁸⁾ ‘不崇朝而會’와 ‘不終朝而會’

【훈정회의 질문】 ‘不崇朝而會’와 ‘不終朝而會’의 기록이 다른 문제 지적

【문화재청 답변】 편찬 과정에서 글자의出入이 일부 다르게 나타날 뿐 내용상의 오류로 보이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

【훈정회의 재질문】

○ 『조선왕조실록』의 전체에 ‘불숭조(不崇朝)’와 ‘불종조(不終朝)’의 사용빈도수가 아래와 같은데, 과연 같다는 것인지 의견을 구함.

○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1446)년 9월 29일 기사의 ‘不崇朝’와 해례본의 ‘不終朝’

- 不崇朝(『조선왕조실록』 총 18회) 다음날 아침이 되기도 전에.
※ 崇朝 이른 아침 동안. 새벽부터 아침밥 때까지의 사이.
- 不終朝(『조선왕조실록』 총 6회) 하루 아침이 마칠 동안. 아침나절.

내 용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不崇朝	2			1		3		2		
不終朝										

내 용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不崇朝				3	2				2	
不終朝	1			1					1	1

내 용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不崇朝	1	1	1			
不終朝	1	1				

8) 제2장 『조선왕조실록』 속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 : 2. 두 번째 기록(세종실록 113권 4번째 기사) 참조. 본서 11쪽

<p>▲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p>	<p>▲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29일 갑오 4번째기사</p>

제4장 마무리

1997년에 UNESCO가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저본으로 삼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록과 차이점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1.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888책, 1,893권이 전해 온다. 이 가운데 『고종실록』 52책 52권과 『순종실록』 8책 22권은 우리 손으로 편찬하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 두 실록을 제외하더라도 『조선왕조실록』을 통털어서 <훈민정음>에 대한 기록은 11회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 113권과 114권에만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록’이 보일 뿐 나머지 9회의 기록은 대부분 도서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문화재청은 수도문물연구원이 발굴조사 중인 서울시 인사동 79번지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 내 유적(나 지역)’의 16세기 건물터에서 향아리에 담긴 조선 전기 세종~중종 때의 금속활자 1600여점을 찾아냈다고 2021년 6월 29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15세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즈음 쓰인 것으로 짐작되는 조선 초기 세종~세조 대의 한글 금속활자 실물과 세종이 만든 한자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추정되는 활자들이 처음 발견된 것이라는 판독 결과가 나왔다. 이 금속활자들 중 일부는 독일인 구텐베르크가 1450년대 서양 최초로 금속활자 활판인쇄를 시작한 때보다 제작 시기가 수십여 년 앞서는 것들로 추정된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세종 때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 금속활자들이다. 일괄적으로 출토된 금속활자들은 한글 금속활자를 이루는 대자(大字), 중자(中字), 주석 등에 사용된 소자(小字), 특소자가 모두 출토됐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시기인 15세기에 한정돼 사용되던 ‘동국정운식 표기법’을 쓴 금속활자가 실물로 확인됐고, 한글 금속활자를 구성하던 다양한 크기의 활자들이 모두 출토된 점 등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동국정운>은 세종의 명으로 신숙주, 박팽년 등이 조선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음에 관한 책으로, 중국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된 ㄹ, ㅎ, ㅂ 등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두 글자를 하나의 활자에 연결 표기해 토씨(어조사)의 구실을 한 희귀본 연주활자(連鑄活字)들이 10여 점이나 나왔다.

한자 활자도 현재까지 전해진 가장 이른 조선 금속활자인 세조 시대의 ‘을해자’(1455년·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보다 20년 이른 세종 시대의 ‘갑인자’(1434년)로 추정되는 활자가 다량 확인돼 학계를 흥분시키고 있다. 조선 전기 다종다양한 금속활자가 한곳서 출토된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백두현 경북대 교수와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한글 활자와 세종이 만든 한자 금속활자인 갑인자의 실물이 사상 처음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내 인쇄문화사에 획을 긋는 발견”이라며 “한글 창제의 실제 여파와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진 당시의 인쇄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조사팀 쪽은 금속활자들의 종류가 다양해 조선 전기 인쇄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여러 활자의 실물들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용 : 피맛골 땅 속에서 ‘훈민정음’ 금속활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 한겨레신문)

3. 세종 5년(1423)에 금속활자인 경자자(庚子字)로 간행된 《이학지남(吏學指南)》은 『세종실록』에 기록으로만 남아있을 뿐 실물은 국내에는 전하지 않는 책이다. 그런데 국외소재문화재단이 2018년과 2019년 일본에 도쿄 와세다 대학도서관 소장 한국 전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일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1423)에 10월 3일 경술 3번째 기사 “승문원(承文院)에서 계하기를, ‘《지정조격(至正條格)》 10부와 《이학지남》 15부와 《어제대고(御製大誥)》 15부를 인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각각 50부씩 인쇄하라.’ 하였다.”라는 기록처럼 금속활자본이 훈민정음 창제보다 23년 전에 세종의 명으로 출간되었다는 사실과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이 일본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UNESCO가 인정하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금속활자인 갑인자의 실물이 발굴된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강국이 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왕이 창제한 문자 훈민정음의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목판본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 때 금속활자로 찍어낸 《이학지남》의 유일본이 일본에서 확인된 것처럼 금속활자로 간행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본도 임진왜란과 정묘재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왜군에게 탈취된 수많은 전적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것은 ‘그럴 것이다’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목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종실록의 기록과 여러 곳에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원형을 보존하고 바르게 계승하면서 인류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가칭) 『훈민정음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루속히 제정되기를 소망한다.

<참고자료> -----

- 네이버 지식백과
- 노형석(2021.6.29) 피맛골 땅속에서 ‘훈민정음’ 금속활자들이 쏟아져 나왔다.<한겨레신문>
- 강석(2021.3.29) 조선 세종 때 금속활자로 찍어낸 ‘이학지남’ 유일본, 일본에서 확인. <KBS>
- 세종실록[世宗實錄]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문중양; 외(2014) 《15세기, 조선의 때 이른 절정》 <민음사>
- 김주원(2005.6) “훈민정음 해례본의 뒷면 글 내용과 그에 관련된 몇 문제”. 《國語學》 (국어학회)
- 조동진(2008.7.31) “훈민정음 해례본 5백년 만에 '햇빛'/안동”. <MBC>
- 정동원(2008.12.25) “소유권 법정 공방/안동”. <MBC>
- 김태식(2011.6.8)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은 도난품"”. <연합뉴스>
- 정천기(2012.5.6) “국보급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기증”. <연합뉴스>
- 김원우(2011.11.29) “안동 광흥사, 도난당한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및 세계문화유산)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불교신문>
- 권오영(2012.5.4) “안동 광흥사 도난 ‘훈민정음 해례본’ 국가기증 논란”. <법보신문>
- 김용태(2014.5.30.) “‘훈민정음 상주본 기증 못해’ 오리발”. <한국일보>
- 김일우(2015.10.9) “1000억 주면 ‘훈민정음 상주본’ 내놓겠다고?” <한겨레>
- 이기환(2019.11.5)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 '간송본'과의 비교는 어렵없는 소리” <경향신문>

[발표1]

訓民正音 創製 原理

金 眞 植

국문학박사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I. 서론

우리가 訓民正音이란 말을 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고유문자의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훈민정음의 제자 및 운용 원리를 해설한 책의 이름이다. 고유문자인 訓民正音은 세종 25년(1443) 계해년 12월에 완성되었다. 훈민정음은 소리글자[音聲文字] 중 낱소리글자[音素文字]로 세계 문자사에 유래를 찾기 힘든 가장 높은 단계의 문자이다(최현배, 1982: 636~638). 그리고 책으로서의 『訓民正音』은 세종 28년(1446) 병인년 9월 상한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문 목판본으로, 『訓民正音原本』이라 칭하는데, 현재 국보 70호(1962. 12. 20. 지정)이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1997. 10.)되어 있다.⁹⁾

『훈민정음원본』은 例義, 解例, 鄭麟趾序로 되어 있다. 예의는 어제서문, 자모음가(초성 17자·병서 6자·중성 11자), 정음 28자의 운용법(중성부용초성·순경음·병서·중성의 결합 위치·성음·사성 표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례는 5解 1例로 되어 있는데, 여러 한문본 중 오직 『훈민정음원본』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본서를 달리 『訓民正音解例本』으로도 칭하게 된 것이다. 5해 1례는 制字

9) 이 책은 전권이 33장 1책으로, 板匡은 가로가 16.8cm이며 세로가 23.3cm이다. 1940년 경북 안동시 臥龍面 周下洞에서 退溪 종파인 後村 李漢杰 닥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澗松美術館에 소장되어 있다.

『훈민정음원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훈민정음 기원설이 제기되었으니, 古篆起源說, 梵字起源說, 八思巴文字起源說, 西莊文字起源說, 象形說 등이 그것이다.

解,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合字解와 用字例를 말한다.

정인지서는 제목이 없이, 용자례 다음에 한 글자씩 아래로 내려 쓴 부분이다. 『훈민정음원본』의 찬술 경위를 설명하고, 참여한 학자들의 이름과 간행 연대를 밝혀 놓았다.

우리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固有名詞 表記, 誓記體, 吏讀, 口訣, 鄉札 등 한자의 음과 訓을 빌려 표기하는 借字表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둥근 송곳 자루를 모난 구멍에 맞추는 어긋남이 있어 능히 통달하는 데 막힘이 있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이 창제됨으로써 슬기로운 이는 하루아침을 다 보내지 않고서도 이를 깨칠 수 있으며, 우둔한 이도 열흘에 이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어찌 그뿐이랴.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잘 표현할 수 있다(『훈민정음원본』정인지서).

본 연구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몇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우리 고유문자가 한민족을 넘어 인류사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임을 밝히는 동시에, 세종대왕은 하늘이 보낸 성인이며 지은 법도와 베푼 정사가 어떤 왕보다 뛰어난 것을 알리고자 한다(『훈민정음원본』정인지서).

II. 훈민정음 창제의 이론적 배경

2.1. 중국음운학

세종은 중국음운학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으니, 몇 예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음운학의 反切法을 응용하여 三分法을 고안한 점이다. 반절법은 하나의 한자음을 表音하기 위해 2자의 한자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同을 徒紅切로 표음하고, 多를 得何切로 표음한다. 여기서 앞 글자 徒나 得은 字母(聲母)라 해서 ㄷ을 나타내고, 뒤 글자 紅이나 何는 韻母(疊韻)라 해서 ‘옹’이나 ‘아’를 나타낸다. 따라서 同은 ‘동’으로, 多是 ‘다’로 읽히는 것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제작할 때는 운모를 다시 중성과 종성으로 분석하여 삼분법을 창안하였다.

둘째, 초성 7서열(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을 중국음운학의

36자모 체계에 맞추되, 우리가 발음할 수 없는 舌頭·舌上音을 통합하여 舌音으로, 脣重·脣輕音을 통합하여 脣音으로, 齒頭·正齒音을 통합하여 齒音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중국의 음 체계를 따랐다.

셋째, 초성의 淸濁 구별을 중국음운학에 따라 全淸, 次淸, 全濁, 不淸不濁으로 나누었다.

넷째, 중성의 口蹙(闔), 口張(關) 자질을 중국음운학의 撮口(翕), 開口(關)의 이론에 따랐다.

다섯째, 성조를 중국음운학의 四聲(平聲, 上聲, 去聲, 入聲) 체계에 따랐다.

2.2. 성리학

性理學(宋學, 朱子學, 程朱學)은 宋代에 성립된 유학의 일파이다. 周頓頤(濂溪, 1017~1073)는 宋學의 비조로, 太極說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程顥(明道, 1032~1085)는 天理說을, 程頤(伊川, 1037~1107)는 性卽理說을 통해 발전시켰으며, 朱熹(朱子, 1130~1200)가 이를 집대성하였다. 太極에서 兩儀(陰·陽)가 서고, 兩儀에서 四象(太陰·少陰·太陽·少陽)이, 四象에서 八卦(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그리고 六十四卦가 형성되어, 만물이 생성된다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에 安裕(安珣)가 도입하여 李齊賢, 李穡, 鄭夢周, 鄭道傳, 權近, 世宗 등이 학통을 이었다. 明나라 3대 成祖(永樂帝)는 13년(1415, 태종 15년, 세종 즉위 4년 전)에 胡廣 등 42명 학자들에게 명하여 『性理大全』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송대의 性理學說을 집대성한 책이다. 영락제는 17년(세종 1년, 1419)에 御製序가 붙은 永樂 3大全(『四書大全』, 『五經大全』, 『性理大全』)을 하사하였다. 세종은 이 책들을 경상 감사 崔府, 전라 감사 沈道源, 강원 감사 趙從生에게 명하여 복간하게 했다.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 시 초·중·종성뿐만 아니라, 습자나 성조 이론에 성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훈민정음원본』제자해와 『성리대전』 권1 『太極圖說』(주역계)의 내용을 비교하면 제자의 대원칙에 성리학 이론이 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

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化生萬物 萬物生生而變化無窮焉(『太極圖說』, 주염계, 『성리대전』 권1)

‘天地之道 一陰陽五行而已 坤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陰陽 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 捨陰陽而何之 故人之聲音 皆有陰陽之理 顧人不察耳 今正音之作 初非智營而力索 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훈민정음원본』제자해)

Ⅲ.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

3.1. 정치·문화적 측면

3.1.1. 위민교화 정신 구현

『훈민정음원본』예의에 ‘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 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가 보이고, 『世宗實錄』 권103, 26년 2월조에 ‘且吏讀制作之本意 無乃爲其便民乎 如其便民也 則今之諺文 亦不爲便民乎’가 보인다. 이는 위민교화 정신의 구현과 관계가 있다.

3.1.2. 고유문자 확립

『保閒齋集』 권11 부록 行狀에 ‘以本國音韻 與華語雖殊 其牙舌脣齒喉清濁高下 未嘗不與中國同 列國皆有國音之文 以記國語 獨我國無之 御製諺文字母二十八字’가 보인다. 이는 고유문자 확립과 관계가 있다. 이미 西藏(吐蕃)에는 640년 전후에 西藏文字(有頭體文字)가 존재했는데 이는 인도 굽타문자를 변형한 표음문자로, 자음 30개·모음 4개로 되어 있다. 元나라 또한 1269년에 세조 忽必烈汗(1216~1294)이 西藏 승 八思巴에게 명하여 八思巴文字를 제정하였다. 이는 서장문자를 개량한 正方形의 표음문자(음절문자)로, 자음 30개, 모음 8개로 되어 있다. 越南도 14세기 경 字南文字를 만들어 썼는데, 이는 한자를 변형하여 제정한 문자이다.

3.2. 어문정책적 측면

3.2.1. 언문일치의 실현

『훈민정음원본』 정인지서에 ‘盖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之字 以通其用

是猶柄鑿之鉏鋸也 豈能達而無礙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強之使同也’와 ‘昔新羅薛聰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陋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이 보인다. 이는 언문일치의 실현과 관계가 있다.

3.2.2. 東國漢字音의 改新

동국한자음은 신라 통일기인 8~9세기에 唐나라 長安音(中國中古音)을 모태로 형성되었다. 이는 당시 고대국어(신라어) 체계에 맞게 정착되었기 때문에 장안음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장안음은 전청·전탁·차청으로 나뉘는데, 신라음은 현대자음 체계와 달리 경음이 없었으므로, 전청은 물론 경음에 가까운 전탁도 모두 평음으로 반영되었고, 차청은 유기음으로 반영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도 동음에는 전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중고음	동음
전청(무성무기음): p t k	———
전탁(유성유기음): b ^h d ^h g ^h	——— 평음으로 반영
차청(무성유기음): p ^h t ^h k ^h	——— 유기음으로 반영

당시 조선 한자음에도 중국음 한자음과 비교해 볼 때 혼란이 극심했던 바, 세종은 이를 통일·정리하여 표준한자음을 제정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 이를 위해 만든 책이 『東國正韻』이다. 본서는 한자에 훈민정음으로 음을 달고 있다.

세종은 본서 편찬을 위해 2남 首陽大君(후에 世祖) 瑠와 3남 安平大君 瑿에게 관장케 하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던 崔恒·朴彭年·申叔舟·成三問·李善老·李塏·姜希顔·曹變安·金曾 등이 세종 26년(1444)에 편찬을 명받고, 세종 29년(1447)에 탈고하였으며, 세종 30년(1448)에 6권을 간행하였다.

『古今韻會舉要』(1297, 元, 熊忠)를 底本으로 삼아 『동국정운』을 편찬할 때, 중국음운학의 36자모 중 당시 조선음에서 구분할 수 없는 설두·설상, 순중·순경, 치두·정치의 구분을 없애 23자모를 사용하고, 代表 漢字도 바꾸었다.¹⁰⁾ 또한 入聲 ㄷ은

10) 정통운서의 36자모 체계는 다음과 같다.

버릇에 따라 ‘以影補來’(ㄹ)로써 교정하였으니, 예를 보이면 ‘擘(뵈)’, ‘質(짚)’, ‘勿(뭉)’ 등이다.

IV.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4.1. 初聲

4.1.1. 單字

4.1.1.1. 基本字

기본자 5자는 ‘各象其形而制之’이다. 『훈민정음원본』제자해에 ‘正音二十八字 各象其形而制之 初聲凡十七字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脣音 ㅁ 象口形 齒音 ㅅ 象齒形 喉音 ㅎ 象喉形’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본자

	조음점	조음체	기본자	제자 원리
牙音	軟口蓋	後舌	ㄱ[k]	象舌根閉喉之形
舌音	齒槽	舌端	ㄴ[n]	象舌附上腭之形
脣音	上脣	下脣	ㅁ[m]	象口形
齒音	齒槽	舌端	ㅅ[s]	象齒形
喉音	聲門		ㅎ[h]	象喉形

4.1.1.2. 加劃字

가획자 5자는 ‘聲出稍厲故加劃’이다. 『훈민정음원본』제자해에 ‘ㄱ比ㄱ 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ㅎ而ㅁ ㅁ而ㅎ 其因聲加劃之義皆同’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음가와 함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牙音	舌頭音	舌上音	脣重音	脣輕音	齒頭音	正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清	見	端	知	幫	非	精 心	照 審	影		
次清	溪	透	徹	滂	敷	清	穿	曉		
全濁	群	定	澄	竝	奉	從 邪	狀 禪	匣		
不清 不濁	疑	泥	孃	明	微			唯	來	日

이 중 ㄴ은 어두에는 올 수 없고 사용례도 극히 드문 바, 독립된 음소가 아니라 ㄴ의 이중자음 [nn]에 불과하다. 상기 예에서 ‘달ㄴ나라’의 ㅎ이 ㄴ에 동화되어 ‘단ㄴ나라’로 발음되는 것을 ‘다ㄴ나라’로 표기한 것이다. ㅁ은 세종, 세조 양대 문헌에서 대개 i, j 와 연결되어, ‘엷미애다’, ‘미애ㄴ나라’(『석』13:9)에서와 같이 피동형으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ㅇ’은 음가가 전혀 없는 것이니, ㅁ은 i, j의 된소리이다. 즉 보통소리 i, j보다 간극을 좁히고 음성기관의 근육을 긴축시켜 내는 소리이다. 따라서 고유어의 음소로 쓰인 각자병서는 ㅅ[sʰ]와 ㅎ[hʰ] 2개인데, 음가는 된소리이다(이기문, 1982: 47~55. 허웅, 1982: 333~342).

4.1.2.2. 合用竝書

합용병서는 합자해에 ㄱ ㅋ ㆁ 등 3자만 예시되어 있는 바, 이는 대표 예만 보인 것이고, 실제로는 ㄱ계(ㄱ ㄴ ㄷ ㅌ), ㆁ계(ㄱ ㅋ ㆁ ㆁ), ㅋ계(ㆁ ㆁ)에 10개가 보인다. ㆁ계는 각 발음(語頭子音群)으로, ㄱ [pt] ㅋ [ps] ㆁ [pts] ㆁ[ptʰ]로 발음되었다(이기문, 1982: 47~63. 허웅, 1982: 317~333).

ㄱ계는 ㄱ [sk] ㄴ[sn] ㄷ [st] ㅌ [sp] 등 각 발음으로 보는 견해(허웅, 1982: 317~333)와 ㄱ [kʰ] ㄴ[ʔ] ㄷ [tʰ] ㅌ [pʰ] 등 된소리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기문, 1982: 47~63).

ㅋ계는 ㄱ계의 발음에 따라 ㆁ[psk] ㆁ[pst] 등 3개의 각 발음으로 보는 견해(허웅, 1982: 317~333)와 ㆁ[pkʰ] ㆁ[ptʰ] 등 2개의 각 발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기문, 1982: 47~63).

4.1.3. 連書

4.1.3.1. 脣輕音

ㄹ은 훈민정음의 17자 초성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용자례에 보면 초성의 하나로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사비爲蝦, 드븍爲瓠). 이것은 ㅎ이 17자 체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용자례에서는 제외된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당시 학자들은 ㄹ은 국어의 한 음소로 인정했으나, ㅎ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록으로 볼 때, 중국어 순경음 非母가 순치마찰무성음 [f]인데 비해 우리나라 순경음은 양순마찰유성음 [β]임을 알 수 있다.

4.1.3.2. 半舌輕音

『훈민정음원본』 합자해에는 ‘半舌有輕重二音 然韻書字母唯一 且國語雖不分輕重 皆得成音 若欲備用 則依脣輕例 ○連書ㄹ下 爲半舌輕音 舌乍附上腭’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반설중음 ㄹ[l]과 반설경음 ㄹ[r] [r]을 구분하여 써야 하지만, 중국 자모의 예에 따라 반설중음 하나로 쓸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¹¹⁾

4.1.4. 淸濁

훈민정음 청탁은 정통 운서와 같이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으로 구별하고, 10음은 설두·설상, 순중·순경, 치두·정치를 통합하여 7음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음운학의 36체계가 『동국정운』에는 23체계로, 훈민정음에는 각자병서를 없애 17체계로 적용되고 있다. 또 전탁자는 아·설·순·치음은 전청자를 병서하고, 후음은 차청자를 병서하여 만들고 있다.

<표 4> 청탁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淸	ㄱ君	ㄷ斗	ㅂ譬	ㅅ戍 ㅈ卽	ㅇ挹		
次淸	ㅋ快	ㅌ呑	ㅍ漂	ㅆ侵	ㅎ虛		
全濁	ㄱᄡ蚪	ㄷᄡ覃	ㅂᄡ步	ㅅ邪 ㅈ慈	ㅎᄡ洪		
不淸不濁	ㅇ業	ㄴ那	ㅇ彌		ㅇ欲	ㄹ閭	ㄹ穰

4.2. 中聲

4.2.1. 單字

4.2.1.1. 基本字

單字[一字中聲] 중 기본자 3자는 天·地·人 三才를 상징한 것이다. 『훈민정음원본』제자해에 ‘中聲凡十一字 舌縮而聲深 天開於子也 形之圓 象乎天也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關於丑也 形之平 象乎地也 | 舌不縮而聲淺 人生於寅也 形之立 象乎人也’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단모음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현대국어에서도 休止, 자음 앞, ㄹㄹ에서는 설측음 [l]로 발음되고, 모음 사이에서는 설탄음 [ɾ]이나 설 전음[r]로 발음되고 있다. 세종은 후자의 경우 반설경음으로 적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표 6> 단자

	음성학적 특징		성리학적 특징		
	혀모양(舌)	음상(聲)	상형 형태	생성 근원	뜻
ㄴ [ʌ]	縮	深	形之圓	象乎天	天開於子
ㅡ [i]	小縮	不深不淺	形之平	象乎地	地闢於丑
ㅣ [i]	不縮(展)	淺	形之立	象乎人	人生於寅

4.2.1.2. 初出字

초출자 4자는 天地 결합을 상징한 것이다. 『훈민정음원본』제자해에 ‘ㄴ ㅌ ㅍ ㅑ 始於天地 爲初出也’, ‘此下八聲 一闔一關 ㄴ與同而口蹙 其形則與一合而成 取天地初交之義也 ㅌ與同而口張 其形則ㅣ與合而成 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 ㅍ與一同而口蹙 其形則一與合而成 亦取天地初交之義也 ㅑ與一同而口張 其形則與ㅣ合而成 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단모음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 여기서 혀(舌)의 伸縮에 대한 개념은 혀의 앞뒤와 관련되는 자질이고(이기문, 1982: 101~124), 입술(口)의 蹙張에 대한 개념은 입술 모양과 관련되는 자질이다(강신항, 1991: 349~350).

<표 7> 초출자

	음성학적 특징			성리학적 특징	
	혀 모양(舌)	음상(聲)	입 열기(口)	생성 근원	뜻
ㄴ [o]	縮	深	蹙(闔)	ㄴ + ㅡ	天地初交之義
ㅌ [a]	縮	深	張(關)	ㅣ + ㅌ	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
ㅍ [u]	小縮	不深不淺	蹙(闔)	ㅡ + ㅍ	天地初交之義
ㅑ [ə]	小縮	不深不淺	張(關)	ㄴ + ㅣ	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

12) 입 열기(口)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中國音韻學	『皇極經世書』(邵雍)	『訓民正音』 制字解	『四聲通考』 凡例 (『四聲通解』 附錄)
合口	翕	闔 口蹙	縮口
開口	關	關 口張	張口

4.2.1.3. 再出字

재출자 4자는 起於 | 중성이다. 『훈민정음원본』제자해에 ‘ㄱㅏ ㅏ ㅑ ㅑ 起於 | 而兼乎人 爲再出也’, ‘ㄱㅏ與ㅏ同而起於 | ㅏ與ㅏ同而起於 | ㅑ與ㅑ同而起於 | ㅑ與ㅏ同而起於 |’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起於 | 중성이란 j계 상향이중모음을 뜻한다. 즉 단자 11자 중 기본자와 초출자가 단모음이라면, 재출자는 이중모음이 된다.

<표 8> 재출자

	음성학적 특징	성리학적 특징
ㅏ[jo]	ㅏ同而起於	兼乎人
ㅑ[ja]	ㅑ同而起於	兼乎人
ㅑ[ju]	ㅑ同而起於	兼乎人
ㅑ[jə]	ㅑ同而起於	兼乎人

4.2.2. 連書

연서 2자가 『훈민정음원본』합자해에 규정되어 있으니. -‘一起 | 聲於國語無用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기긔之類 其先縱後橫 與他不同’이 그것이다. 여기서 연서는 一가 음절주음, |가 음절부음인 j계 상향이중모음이다. 그리고 ‘국어’는 중앙어를, ‘아동지언’은 계층방언을, ‘변야지어’는 지역방언을 뜻한다. 그리고 ‘아동지언’이라한 것을 보면 중앙어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이기문, 1982: 126).

<표 9> 연서

	음성학적 특징	음가
	一起	[jʌ]
一	一起	[ji]

4.2.3. 合用竝書

4.2.3.1. 同出合用

합용병서는 중성 2자나 3자를 합용한 글자이니, 『훈민정음원본』합자해의 ‘中聲二字三字合用 如諺語·과爲琴柱·왜爲炬之類’가 그것이다. 이 중 동출합용[이자합용] 4자는 공통바탕에서 나온 것을 둘씩 포개어 만든 글자이다. 『훈민정음원본』중성해의 ‘二字合用者 ㄱ與 ㅏ 同出於 故合而爲 ㅑ ㄴ與 ㅓ 又同出於 ㅓ 故合而爲 ㅕ ㅗ與 ㅛ 同出於 ㅛ 故合而爲 ㅛ ㅜ與 ㅠ 又同出於 ㅠ 故合而爲 ㅠ 以其同出而爲類 故相合而不悖也’가 그것이다.

여기서 ㅑ[wa], ㅕ[wə]는 고유어 표기에 사용된 w계 상향이중모음이고, ㅛ[joja], ㅞ[jujə]는 형식자로, 사중모음이다.

<표 10> 동출합용 1

	同出	合用	음가
ㅑ	·	ㄱ+ㅏ	[wa]
ㅕ	—	ㄴ+ㅓ	[wə]

<표 11> 동출합용 2

	同出	合用	음가	비고
ㅛ	ㅓ	ㅛ+ㅓ	[joja]	형식자
ㅞ	ㅛ	ㅞ+ㅛ	[jojə]	형식자『동국정운』에만 사용

4.2.3.2. ㅓ 相合

ㅓ 상합 14자는 1자중성[단자]이나 동출합용에 ㅓ가 상합한 글자이니, 『훈민정음원본』중성해의 ‘一字中聲之與 ㅓ 相合者 ㅑ ㅕ ㅛ ㅞ ㅜ ㅠ ㅛ ㅞ ㅜ ㅠ ㅛ ㅞ ㅜ ㅠ 是也 二字中聲之與 ㅓ 相合者 ㅑ ㅕ ㅛ ㅞ 是也 ㅓ 於深淺闊關之聲 竝能相隨者 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 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가 그것이다. 음가는 j계하향이중모음, 삼중모음, 오중모음 등 다양하다. 특히 ㅛ[joj], ㅞ[juj], ㅛ[joja], ㅞ[jujə]는 문헌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표 11> | 상합

	一字中聲之與 相合(二字相合)		二字中聲之與 相合(三字相合)	
	이 니 귀 꺾 귀 꺾	피 꺾 꺾 꺾	내 꺾	꽤 꺾
음가	[ɿ][iɿ][oɿ][aɿ][uɿ][əɿ]	[joɿ][jaɿ][juɿ][jəɿ]	[waj][wəj]	[joaj][juəj]
	j계하향이중모음	삼중모음		오중모음
음성 학적 특징	舌展聲淺而便於開口			
성리 학적 특징	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			

4.3. 終聲

『훈민정음원본』예의에 終聲復用初聲 원칙이 보이니, 초성에 쓰인 23자모가 모두 종성에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성해에서 8종성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였다.

<설명 1> 종성 사용의 원칙 및 허용

1. 원칙: 終聲復用初聲(예의, 종성해)

전청: ㄱ ㄷ ㅂ ㅅ ㅈ ㅎ

차청: ㅋ ㅌ ㅍ ㅊ ㅎ | 급. 려: 입성의 종성

전탁: ㄱ ㄷ ㅂ ㅅ ㅈ ㅎ

불청불탁: ㅇ ㄴ ㄹ ㅁ ㅂ ㅅ ㅈ ㅎ | 완. 불려: 평, 상, 거성의 종성

2. 허용: 八字可足用也(종성해)¹³⁾

13) 그러나 후기중세국어의 음절 말 자음 체계는 8종성에 △을 포함한 9종성 체계였다. 종성 △은 15세기 문헌에 있어 v -f, v - β의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해례 종성해는 △은 平上去聲之終에, ㅅ은 入聲之終에 소속시킴으로써 사실상 이들이 음절 말 위치에서 구별되었음을 암시하고

전청 : ㄱ ㄷ ㅂ ㅅ(급. 려)

불청불탁: ㅇ ㄴ ㄹ ㅁ (완. 불려)

4.4. 聲調

4.4.1. 기록

성조에 대한 기록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훈민정음원본』합자해에는 ‘平聲安而和 春也 萬物舒泰 上聲和而舉 夏也 萬物漸盛 去聲舉而壯 秋也 萬物成熟 入聲促而塞 冬也 萬物閉藏’으로, 『訓民正音諺解本』本文 夾註에는 ‘去聲은 뭇노푼 소리라. 上聲은 처서미 늦갑고 乃終이 노푼 소리라. 平聲은 뭇 늦가븐 소리라. 入聲은 썰리 굻돋는 소리라.’로, 『訓蒙字會』凡例에는 ‘늦가온 소리엿 字는 平聲이니 點이 없고 기리 혀 나중 들티는 소리엿 字는 上聲이니 點이 돌히오 곧고 바르 노푼 소리엿 字는 去聲이니 點이 헉나히오 곧고 색큰 소리엿 字는 入聲이니 點이 헉나히라.’로, 『韻解訓民正音』(신경준, 영조 26, 1750)에는 ‘故調聲歌曰 平聲平道勿低昂 遇上高呼猛厲強 去韻哀哀音漸遠 入宜短促急收藏 平者 不上 不下而平也 上者高呼猛厲而上也 去者哀哀漸遠而去也 入者短促收藏而入也’로 나타난다.

4.4.2. 체계

후기중세국어 성조 체계는 평성[低調]과 거성[高調]의 平板調體系(level-pitch register system)이다. 따라서 입성은 기술한 바와 같이 성조소가 아니다. 또한 상성은 평성(低調)과 거성(高調)의 並置이다(이기문, 1982: 144~153).

이에 대한 규정상 증거는 『훈민정음원본』합자해의 ‘平聲安而和 上聲和而舉 去聲舉而壯 入聲促而塞’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규정은 唐나라 『元和韻譜』를 본뜬 것으로 본서는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淸而遠 入聲直而促’과 같이 8자 중 1자도 중복이 없음에 대하여 『훈민정음원본』은 상성에 쓰인 2자 중 ‘和’와 ‘舉’가 바로 평성과 거성에 쓰인 것과 중복되어 있다. 이는 상성(和而舉)이 ‘평성(和)과 거성(舉)’의 병치임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정상 증거는 『訓民正音諺解』‘협주’의 ‘거성은 뭇노푼 소리라. 상성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을 쓰지 않고 ㅅ을 쓰기로 규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조치였다. 따라서 △이 15세기 문헌에 널리 사용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처서미 늦갑고 乃終이 노푼 소리라. 平聲은 못 늦가쁜 소리라. 입성은 썰리 굻돋는 소리라.’에서도 발견된다. 거성을 ‘가장 높은 소리’, 평성을 ‘가장 낮은 소리’라 하고, 중간에서 상성을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라 한 것도 해례 합자해의 ‘和而舉’와 근본적으로 합치된다.

다음으로 구조적 관점에서도 확인된다. 상성은 두 평판조(저조와 고조)의 병치(昇降調體系, gliding-pitch contour system)라서, 상성이 걸린 음절은 모두 음장을 가지고 있다. 『訓蒙字會』 범례도 ‘기리 혀 나중 들티는 소리’라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평성(저조)과 거성(고조)의 병치가 상성으로 표기된 예가 발견된다.

부터(佛, 평성, 평성) + ·이(주격조사, 거성)⇒부:테(주격형, 상성), 다리(橋, 평성, 평성) + ·이(주격조사, 거성)⇒다:리(주격형, 상성), 막다·히(평성, 평성, 거성)⇒막:대(모음간 ‘ㅎ’탈락으로 축약, 평성, 상성)

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하였다.

첫째 창제의 이론적 배경으로 중국음운학과 성리학을 들 수 있었다.

둘째, 창제 동기로 정치·문화적 측면과 어문정책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전자는 다시 위민교화 정신의 구현과 고유문자의 확립으로, 후자는 언문일치의 실현과 동국한자음의 개신으로 세분할 수 있었다.

셋째, 제자 원리로 초성은 단자로 기본자 5자, 가획자 9자, 이체자 3자로 나누어 만들었으며, 병서는 각자병서 8자와 합용병서 10자로 나누어 만들었다. 그리고 연서로 병을 만들었다. 중성은 단자(일자중성)로 기본자 3자, 초출자 4자, 재출자 4자로 나누어 만들었으며, 아동지언과 변야지어를 위해 연서 2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합용병서로 동출합용 4자, |상합 14자를 만들었다.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고 종성 부용초성의 원칙을 취했다. 따라서 동국정운에 쓰인 초성 23자가 모두 종성에 쓰일 수 있지만, 소위 8종성법(실제로는 9종성법)을 취했다.

넷째, 성조는 중국과 같이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입성은 파열음의 내파화를 뜻하며 평성[저조]과 거성[고조]의 평판조 체계이다.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병치이다.

참고문헌

- 강신항(1991),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권재선(1992), 『훈민정음의 표기법과 음운 -중세음운론-』, 우골탑.
- 김석득(1986), 『우리말연구사』, 정음문화사.
- 김석환(1977), 『훈민정음 연구』, 한신문화사.
- 김진식(2007), 『현대국어의미론연구』, 박이정.
- 김형주(1996), 『우리말발달사』, 세종출판사.
- 박병채(1992), 『국어발달사』, 세영사.
- 신상순 외(1988),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 유창균(1966), “‘象形以字倣古篆’에 대하여”, (이기문 편, 1977, 『국어학논문선』 7(문자), 민중서관, 153~179.
- 유창균(1982), 『훈민정음』, 형설출판사.
- 유창균(1993), 『훈민정음 역주』, 형설출판사.
- 이기문(1974),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몇 문제”, 『국어학』2, 국어학회, 1~15.
- 이기문(198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이기문(1994),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기문 편(1977), 『국어학논문선』7(문자), 민중서관.
- 이동림(1974), “훈민정음 창제 경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62~64 합본, 501~504).
- 조선어학회(1946), 『訓民正音原本』(영인본), 보진재.
- 최범훈(1990), 『한국어발달사』, 경운출판사.
- 최현배(1982), 『고친 한글갈』, 정음문화사.
- 허동진(1998), 『조선어학사』, 한글학회.
- 허웅(1982), 『국어음운학』, 정음사.
- 홍기문(1947), 『정음발달사(상·하)』, 서울신문사출판국.

[발표2]

한글은 왜 어려울까

안 남 영

<까칠한 우리말> 저자

들어가며

세종대왕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창제한 훈민정음. 누구나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애민정신이 깃들어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한글 자모는 그 창제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총·균·쇠』에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게 고안된 문자 체계”라며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 없는 놀랍고도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글은 21세기 들어 디지털 기기 조작에서 쓰임새를 보면 온 세계가 부러워할 만하다. 민족적 자부심에 이만한 근거가 또 있을까 싶다.

한글은 28자에 불과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면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해도 올바르게, 정확히 쓰는 사람을 찾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 날로 오염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과 한국어는 엄밀히 구분된다. 간단히 말하면 한글은 표기 문자 체계를 가리키고 한국어는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하는 우리말을 말한다.¹⁴⁾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어가 선망의 언어로 세계만방에 성가를 떨치고 있지만 정작 본토에서는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글 표기가, 한글맞춤법이 엉망인 글과

14) 물론 한국어는 외국인이 배우는 배달말이고, 국어는 우리가 우리말을 가리키는 말로 약간 다르다.

간판이 넘쳐나고 유명 인사도 방명록에 뭐라고 쓸라치면 서투른 맞춤법 때문에 애를 먹는다.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 댓글 등 문자 소통 실태를 보자면 한글의 퇴행이 역력하다. 10~20대 사이에 유행하는 이른바 ‘급식체’를 보면 한글의 종말이 예감될 정도다.

한글이 뭐냐면
 맞춤빼블 엉망으로 썬도 아라볼썬익고
 글씨를 요생해개 써도 알와벌썬인고
 다른 Na라 언ㅇJ를 섞어써도
 R아볼Su있Go
 알아볼 수 있고 하나도 안지켜도 문법을
 띄어쓰기를안해도알아볼수있고
 오ㅏㅓ가.수읷ㅓ이 맘ㅍ이나도알아줄 수
 있고
 뽕뽕뽕같은 존재하지 않는 말도
 만들수있는거다



급식충

2015-11-28

0

★★★★★

형들 전화 씹친절한거 ㅇㅈ?
 튀김옷 바삭바삭 씹오지는거 ㅇㅈ하는
 부분?ㅋㅋ
 아니라고?아니면 씹에바터는데ㅋㅋ
 칠곡치킨집 다망하는각 ㅇㅈ? ㅇㅇㅈ 씹ㅇㅈ
 판사님도 ㅇㅈ하시죠?
 네그림습니다(by.부장판사)
 판사님도 ㅇㅈ한씹꿀맛인부분ㅋㅋ 앙기무떠
 앙노무떠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급식체’. 한글의 오염을 보여주는 대표적 실례다.

냉정하게 진단하자면 현재 한글은 무너져가고 있으며, 날로 그 속도와 범위가 우려스러운 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언중의 무관심이나 외국어를 섞어 써야 튀어 보인다는 사대적 언어 관념 등 다양하다.

사실 한글에 대해 규범성을 논하면 단순히 문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형태론, 통사론 등 국어의 문법 영역까지 걸칠 수밖에 없다. 음절 구조를 살펴보다 보면 음운론에서 형태론까지 시야를 확장하게 마련인데, 학문적 숙성이 모자란 탓에 고찰 범위에 대한 선긋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는 한글이 지닌 문자의 속성과 그에 따른 발음 문제 등을 생각나는 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글이 어려운 면을 예의 논하지 않는다면 한글의 온전한 모습을 제대로 짚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만큼 냉철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지점들이 있다는 말이다. 음절 구성 등 표기 원리, 이에 따른 음운변동 등 어떻게 보면 우리말 또는 한글의 약점일 수 있으니, 우리말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언중의 고민과 성찰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한글은 쉬운 문자인가

구글에서 ‘어려운 언어’를 검색해 보면 한국어는 단연 순위권에 들어있다. 미국 해외파견 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에 따르면 가장 어려운 언어 그룹으로 중국어, 일어, 한국어, 아랍어 4개 언어가 꼽혔다.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 학습시간이 1그룹 600시간, 2그룹 1,200시간보다 한참 더 긴 ‘2,000시간’으로 나온다. 인도의 사이버 원격대학인 ‘레버리지 에듀(Leverage Edu)’에서는 어려운 언어 10위에, 전문 번역서비스 사이트인 ‘랭귀지 닥터스(The language doctors)’는 배우기 고약한 언어 5위에 각각 한국어를 올려놓았다.

외국인에게 비친 한글 형태에 대한 인상은 다양하나 대체로 긍정적이다. 최근 세계 OTT시장을 주름잡은 <오징어 게임>에서 □, △, ○ 모양이 극적으로 소개되면서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크게 올라가기도 했다. 그 반응을 정리하면 “글씨가 아름답다.”, “특이하다”, “친근하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글씨가 비슷비슷해서 헷갈린다”라는 반응들이 반드시 관찰된다—실제 비슷한 글자를 구분 못하는 건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국내로 이주해온 다문화 여성이나 해외 거주 외국 학생(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쳐 본 경험을 토대로 요약해 보면, 대부분 외국인은 한글이 쉽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작 완벽하게 익히기에는 지극히 까다롭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글이 왜 그리 까다로울까. 이는 난해한 한국어의 기본적 속성에서 비롯된 면도 있지만, 맞춤법이라고 하는 표기법에 대해 외국인이 어쩔 수 없이 겪는 ‘혼란’과 ‘오류’는 한국어가 난해한 언어라는 중요한 반증이며,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표기나 발음의 문제로 국한해 보면 한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내국인이라고 해서 한글을 만만하게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한 읽고 적는 문제만 봐도 전문가 그룹에서조차 실수가 수없이 발견된다. 신문과 방송, 전문 서적과 시집 드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면 오류가 없지 않다. 영국에서도 철자 쓰기에 서툰 단어들 목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광범하지는 않다.

사실 이런 실수는 언어로서 국어의 문제인지, 문자로서 한글의 문제인지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 경계가 모호하기에 한글의 문제로 축소해서 논의하더라도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등을 들어 접근하고 설명하려 들면 형태론을 포함한 문법의 영역을 넘나들게 된다. 단어 생성이나 용언활용 등에서 빚어지는 발음과 표기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데, 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한글의 표기방법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문자로서 한글의 읽고 적기, 즉 발음과 표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꽤 있으나 한글이 과연 어려운지의 여부를 주제로 놓고 접근한 연구는 별로 없다. 한글이라는 것은 자모 음소로 존재하지 않고 음절의 형태로 사용되며 단어로 그 뜻을 드러낸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단어 혹은 어절 단위에서 나타나는 발음과 표기 문제도 크게는 한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요소가 한두 영역이 아니다.

한글이 어려운 이유

1. 받침이 존재한다.

1) 음절 구성

한글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이뤄진다. 초성과 종성이 없어도 음절이 이뤄질 수 있으나 중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외국인에게 처음 한글을 가르치다 보면 종성 즉 '받침'의 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어떤 학생들은 받아쓰기를 할 때 '불'을 '부르'로 쓰거나 '원'을 '워니'으로 쓰는 등 알파벳에 익숙한 나머지 병서법(나란히쓰기)에 따라 음절을 만든다. 이것은 몇 번의 주의와 연습으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외국인에게는 매우 낯설고 어려운 구성 방법일 수 있다. 한국인에게겐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중의 발음과 표기 실태를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예를 들어 한 반에 ‘임영수’라는 학생과 ‘이명수’라는 학생이 둘 있다면 출석 부를 때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시러?”

“나한테 일해라절해라하지 마라.”

내국인 젊은이의 문자 대화에서 등장하는 문장의 예다. 발음을 따라 편한 대로 쓰거나 역으로 받침이 있을 것으로 넘겨짚은 탓에 나온 잘못이다. 받침의 유무에 대해 개념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실수한다. 문제는 그 사례가 넘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받침 때문에 발음과 표기 규범이 흔들리다 보니 받침은 어쩌면 한글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영어 표기에서는 school이나 first에서 보듯이 모음 없이도 초두에서나 말미에서 자음이 연거푸 나와 각각의 소리를 지닐 수 있다. 한글은 모음이 있어야만 음절을 구성하는 것 때문에 발음과 표기가 달리 인식될 수 있다. ‘노름’과 ‘놀음’은 엄연히 다른 말이나 같은 말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이 영어식으로 나란히쓰기를 한다면 뜻을 달리 가져갈 수 없더라도 표기 혼란만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받침과 이어지는 자음의 조합이 영어보다 훨씬 다양하다. 한자에서 온 글자에 받침이 많은데, 단어생성 과정에서 그런 글자들이 뜻을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조합을 이루다 보니 자음끼리의 충돌이 생기는 가짓수가 워낙 많다.¹⁵⁾ 그 중 편하지 않은 발음들이 생겨나고 이는 다양한 음운현상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표기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물론 표기오류는 한 자어보다 토박이말에서 더 두드러지지만 그 이유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다.

2) 받침과 발음

영어에도 받침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good이나 bag 같은 단어는

15) 이어서 발음할 때 고유의 음가를 유지할 수 없게끔 음운변동이 불가피한 양상

한글로 표기하면 받침이 들어간 ‘긱’, ‘백’ 형태가 될 것이나 실제 영어에서는 다르다. 한국어로 표기하면 받침에 해당하는 d, g가 모음과 연결되지 않아 소리가 끝까지 나지 않고 닫히고 만다. 이런 것을 폐쇄음 또는 불파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글자라도 초성과 음가가 다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모음과 결합하지 않은 맨 뒷소리를 완전히 닫아 버리지 않고 미세하게 ‘d [드]’, ‘g[그]’를 소리 낸다. 이것은 국어와 큰 차이점으로, 음운현상을 기본적으로 배제하는 기제다. 반면 국어에서 받침이 다른 어절 또는 음절과 연결되면 다양하게 교체되거나 축약된다. 연음, 자음동화, 유성음화, 경음화(된소리되기), 구개음화, 격음화, ‘ㄴ’첨가 등 음운현상이 다 받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¹⁶⁾

한글의 자음은 모두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 때 ‘ㄴ ㄹ ㄹ ㅁ ㅇ’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뒤에 모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즉 받침으로 끝나면 그 소리가 끝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올 때, 유성음 ‘ㄴ, ㄹ’이 올 때, ‘ㄹ’이 올 때, 무성 자음이 연결될 때, 또 ‘ㅣ’ 모음이 들어있는 음절이 오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 소리가 변한다.

이렇듯 교체나 축약 등 음운법칙이 복잡하지만 우리말 발음과 표기원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국인조차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 하물며 외국인들은 자국어에서 보지 못했던 규칙 때문에 한국어가 어렵다고 말한다. 실제 중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라는 대답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조음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음운법칙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받침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른다. 나란히쓰기로 음절을 구성한다고 해서 음운법칙이 덜 복잡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설거지’처럼 적어도 연음 표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굳이’ 같은 구개음화의 적용 문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¹⁷⁾

16) 음운현상은 받침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받침과 뒷 음절의 속성끼리 부딪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받침과 같은 자음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국어처럼 자음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영어의 한 단어 또는 구에서 음절 끝 자음(국어의 받침)과 이어지는 자음(모음과 결합하는 음절의 초성에 해당)이 만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 음가를 유지한다. 가령 good morning 발음이 [굳-모닝]이지 [굳모닝]은 아니다.

우리말에서 받침으로 쓰이는 글자는 홑받침 14개, 쌍받침 2개, 겹받침 11개 등 27개에 달한다. 그러나 발음은 다르다. 15세기에는 8가지를 인정했지만 얼마 후 7가지로 정리돼, 받침에서 인정되는 음가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뿐이다. 이를 대표음이라고 한다. 27가지 자음을 대표음 7가지 소리로만 읽어야 한다는 말인데, 때문에 표기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ㄷ, ㅅ, ㅈ, ㅊ, ㅌ, ㅍ’이 받침으로 쓰일 때 음가가 같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기 오류나 발음(연음) 오류다. 그 중 ‘ㅈ, ㅊ, ㅌ’가 받침으로 들어간 명사에 조사가 붙을 때 실수가 흔하다. 예를 들어 ‘젓, 빛, 끝’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는 경우 대표음과 상관없이 각각의 음가대로 연음되어야 하지만 실제 ‘ㅅ’으로 연음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부주의는 방송기자들에게도 수시로 발견되거나 ①처럼 인터넷 댓글을 보면 형태가 다른 받침의 연음 구분에 전혀 개념이 없는 듯한 표기 오류가 수도룩하다>(*표는 오류)

- ① 젓을[저슬*], 빛이[비시*], 끝을[끄슬*]
- ② 받을[바출*], 끝에[끄체*], 곁으로[겨츠로*]
- ③ 리 : 읽고[일꼬], 읽지[익찌], 읽는[잉는]; 읽은[일근]
- 래 : 넓고[널꼬], 넓적[넙쩍], 넓은[널븐]; 밭고[밥꼬], 밭지[밥지], 밭아
[발바]

그런가 하면 ②와 같이 ‘ㄷ’받침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조건인데도 구개음화를 일으켜 발음(노래)하는 가수도 많다. ③은 겹받침의 발음을 보여 주고 있지만, 사실 발음에 대한 원칙을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표기 혼란으

17) 나란히쓰기가 어찌면 더 복잡한 문제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받침이라는 형태소를 통해 어원을 밝혀 적을 경우 의미파악이 수월했던데 비해 형태소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능하기 어렵다.

로 이어지는 사례들이다. 겹받침 ‘리’은 4가지, 똑같은 ‘래’ 받침인데도 ‘넓다’는 3가지로, ‘뵤다’는 2가지로 소리 난다.

3) 받침과 표기

받침으로 인한 음운현상을 표기에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원칙이 있긴 하나 완벽하지 않다. 게다가 겹받침의 경우 어떤 건 앞에 있는 자음이, 어떤 건 뒤에 있는 받침이 음가를 지니며, 연음될 때는 2가지가 다 소리 나는 수도 있다. 그만큼 복잡하다.

- ① 설거지(연음 인정), 망설이다(연음 불인정), 뒤치다꺼리(‘푸닥거리’와는 달리 된소리로 표기.일종의 나란히쓰기), 떡볶이(발음 대신 ‘볶+이’의 어원을 살림)
- ② 책임 않짐*, 난 가지 안을래*
- ③ 넓다, 넓적하다, 널따랗다, 널찍하다

①, ②는 표기하는 데 실수하기 쉬운 대표적 예다. ③은 어간의 겹받침이 접미사와 연결될 때 표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예로 든 것이다. 같은 어원인데도 어간의 표기가 달라지는 사례로서, 그만큼 받침의 전모와 단어별 변화의 속성은 다른 언어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까다롭다.

4) 받침 음가의 제약

받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 음운현상이 연음법칙이다. 이는 한 단어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단어 사이 연음은 한국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영어의 ‘구다이디어(Good idea)’나 프랑스어의 ‘샹젤리제(Champs Elysees)’도 연음의 예다.

한글은 받침의 음가를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가지만 인정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연음법칙은 때에 따라 말음법칙(끝소리법칙, 절음법칙)으로 변칙 적용

18)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스까지 포함해 받침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8가지로 보았다.

된다.¹⁹⁾ ㅅ, ㅈ, ㅊ, ㅋ, ㆁ, ㅍ, ㅌ, ㅍ, ㅍ 등의 받침이 연음될 때 대표음인 ㄱ, ㄷ, ㄴ로 바뀌는 것이다. 영어로 hot oil 발음을 들어보자. ‘핫 오일’을 우리말로 발음하면 [하도일]이어서 말음법칙이 적용된 사례로 들린다. 원어민도 이렇게 발음한다면 영어에도 말음법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t]가 [d]로 약화한 것일 뿐 대표음 개념과는 상관없다.

요컨대 한글의 받침은 대표음이라는 것이 존재해 일부 자음의 경우 받침에 서는 제 음가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

5) 받침 유무가 헛갈린다

한때 유명했던 방송 프로그램 중에 ‘무릎팍도사’가 있었다. 그러나 표준어는 ‘무르팍’이다. 이는 어원에 기초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 탓에 범한 오류인데, 사람마다 단어 생성에 대한 정보 인식과 발음 습관이 제각각이어서 받침 유무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받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없는 것이 맞는다든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있는 것이 맞아 혼란을 주는 것들이다.

① 가르마(-름-*), 꼭두각시(-둑-*), 구시렁거리다(군-*), 나더러(날-*), 농지거리(-짓-*), 부기(붓-*), 솜바꼭질(-박-*), 아무튼(-뭉든*), 어두컴컴하다(-똥-*), 얼마큼(-만-*), 예부터(옛-*), 자그마치(-만-*), 짹짹(-짹-*); 며칠(몇일*)

② 까짓것(-지껏*), 날염(나-*), 맞춤양복(마-*), 몰아붙이다(-부치-*), 문외한(무늬-*), 부침개(-치-*), 알다시피(아-*), 흘청(호-*), 흘뜨리다(흐-*)

①은 받침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맞고, ②는 받침이 들어있는 표기가 맞는다. 며칠은 ‘몇 일’에서 온 말이 확실해 보이지만, 16~7세기 고어에 이미 ‘며칠, 몇칠’형태가 존재해 ‘며칠’로 통일했거니와 받침의 유무와 관련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군에 속한다.²⁰⁾

19) 받침 뒤 ‘ㅅ’, ‘ㅈ’, ‘ㅊ’, ‘ㅋ’, ‘ㆁ’, ‘ㅍ’, ‘ㅌ’, ‘ㅍ’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 받침인 자음은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연음된다. 부엌 안[부어간], 맛없다[마덜따], 꽃 위[꼬뒤], 늪 앞[느밭]

20) 한때 며칠은 기간을 나타낼 때, ‘몇 일’은 날짜를 말할 때 쓰는 것으로 분리해 표준말로 각각 인정된 적이 있었다.

또 이런 것들 가운데는, 예전에는 맞았던 것이 틀린다고 규정한 경우(마춤양복→맞춤양복),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젓먹이가 손뼉 치는 재롱을 말하는 ‘짜짜꿍’은 ‘짜짜’이라는 의성어에서 나온 것이 확실한 만큼 어원을 살려 ‘짜짜꿍’처럼 써야 할 텐데, 그게 아니다. ‘농지거리’[농:지꺼리]는 ‘농(弄)+짓거리’의 구조로 볼 수 있으나 발음과 표기 규범이 의아하다.

2. 자음 체계

1) 3자음 체계

훈민정음은 자음을 예사소리(평음), 거센소리(격음), 된소리(경음) 3가지로 나누었다. 평음은 구강 안에서 기압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약하게 파열된다. 격음은 거세게 내뿜는 숨을 동반하는 자음이며, 경음은 후두 부분의 근육을 긴장하지만 거의 기식이 없는 자음이다. 즉 기식과 긴장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이 3가지 자음의 발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표기에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어는 자음 중 아예 거센소리(격음)가 없는 언어다. 그래서 이들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칠 때 자음 발음 체계를 정확하게 익히도록 하는 일이 쉽지 않다. 발음에서 평음, 격음, 경음의 구분 노력은 정확한 표기 습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투리에서는 이걸 소홀하게 또는 과도하게 발음하는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맞춤법에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언어습관이다. 결과적으로 자음체계에 대한 무신경은 한글의 완성도를 스스로 흐드는 셈이어서 주의가 요망된다.

전라도에서는 아래 예시된 ①처럼 ‘ㄱ, ㅂ+ㅎ=ㅋ, ㅍ’ 형태의 음운축약 현상을 무시한 발음 즉 평음을 단순히 연음하는 발음이 두루 관찰된다. 또 전라도뿐 아니라 대부분 언중이 ④처럼 두 가지가 같은 말인 줄 알고 쓰지만 틀린다. ‘그러잖아도’는 동사이고, ‘그렇잖아도’는 형용사다.

- ① 생각하지[생가가지*], 복잡한[복자반*],
- ② 덩굴(-쿨*), 해감(-감*), 흐리멍덩하다(-텅-*); 널빤지(-판-*), 해코지(-
꼬-*)
- ③ 나침반(판), 빠치다(-지-), 구린내(쿠-), 후덥지근하다(-텃-)
- ④ 그렇잖아도, 그러잖아도 ‘ㅣ’모음이 조화를 부린다

②는 평음과 경음, 경음과 격음이 혼용되는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인정되는 사례다. 언중의 발음 습관이 제각각이고, 어느 것이 대세를 이루는지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은 둘 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③은 평음과 격음, 평음과 경음 모두 표준말로 받아들여진 말이다. 여기서 원칙의 설득력에 회의가 드는 지점일 수 있다. 3자음 체계는 분명 모든 자연의 소리까지 잘 담아낼 수 있는 혁신적 문자 체계지만 주의력이 충분치 못한 발음습관 때문에 말글살이 현실이 골치 아픈 지경에 와 있다.

2) 된소리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자모의 소릿값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영어에서는 자모의 음가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많다. 모음 ‘a,e,i,o,u’가 결합하는 자모음이나 위치에 따라 소리가 제각각이고, ‘c,g,x’등 자음도 만나는 모음에 따라 다른 음가를 갖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글의 우수성이 도드라진다. 그러나 이것은 음절을 하나씩 읽을 때 가능한 것이고, 단어나 구를 형성하여 읽어나갈 때는 얘기가 다르다. 복잡한 음운현상 때문이다. 여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원칙과 도무지 따라잡기 어려운 예외, 제각기 다른 언중의 발음습관이 존재하다 보니 웬만해서는 발음과 표기를 완전히 정복하기 힘들다. 그중 된소리되기(경음화)가 가장 심각하다. 또 주의해야 할 거센소리를 대충 발음하다 보면 표기의 정석에서 멀어질 수 있다. 또 골칫덩이 ‘ㄹ’은 변화무쌍한 조화로 발음에 대한 웬만한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는다.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대략 분류해 보면 유형이 다음과 같다.

- ① 걷고[건꼬], 집다[집따], 속박[속빠], 접수[접쑤], 짓지[진찌]
- ② 먹을 곳[머글꼐], 갈 데[갈떼], 할 바[할빠], 볼 수[볼쑤], 올 적[올쩍]
- ③ 끊고[끈꼬], 신지[신찌], 감다[감따], 안소[안쏘]
- ④ 갈등[갈똥], 훌대[훌때], 발신[발쑤], 실제[실째]
- ⑤ 등불[등뿔], 봄바람[봄빠람], 논둑[논똥], 봄비[봄뵤], 안방[안뵤]
- ⑥ 주가[주까], 공권[공뀐], 내과[내과], 민법[민뵤], 사증[사쑤]
- ⑦ 관건[관뀐], 교과[교:과], 불법[불뵤], 효과[효과]
- ⑧ 건수[건쑤], 달랑[달랑], 본새[뿐새], 소나기[쏘나기], 속맥[쑤맥], 조금[쑤금]
- ⑨ 가스[까스], 게임[깨임], 달리[딸러], 댐[땨], 버스[뵤스], 서비스[써비스],
잼[뵤]

①은 가장 흔한 것으로 무성음 받침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이 ‘ㄱ, ㅌ, ㅍ, ㅊ, ㅍ’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②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뒤에 올 때이고, ③은 ‘ㄴ, ㅁ’ 소리가 나는 어간의 받침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이 된소리로 교체된 예다. ④는 한자어 ‘ㄴ’받침 뒤에서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며, 토박이말에서는 ②처럼 적용되기도 한다. ⑤는 보통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경음화의 예다. ⑥은 흔히 접미사로 들어가는 한자어 ‘-가(價), -권(權), -과(科), -증(證)’ 등이 들어간 2음절어인데 거의 예외가 없다. 사법(司法)의 경우 법의 종류가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경음화가 안 일어난다. ⑦은 예전엔 평음(예사소리) 발음이 원칙이었으나 2017년 된소리가 표준발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⑧은 어두경음화의 예로서 현실발음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표준발음은 아니다. ⑨ 같은 외래어로 첫소리를 평음으로 적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들이다.

또 엄연히 된소리가 나는 단어 가운데 어떤 건 된소리로 적고, 어떤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지 않으며, 또 둘 다 허용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까칠하다-가칠하다, 재빠르다-재바르다, 까우똥-가우똥, 깜빡-깜박, 따듯하다-따똥하다 등은 둘 다 맞는다. 음절 단위로 끊어 읽으면 일어나지 않을 경음화가 하도 많아 일일이 오류를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중 방송기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으로 ‘등기, 창고, 창구’가 있는데, [등끼,창꼬,창꾸]로 발음하면 안 된다. 따져보면 한글 발음의 약점이 아닐 수 없다.

3. 모음 ‘ㅣ’의 마법

모음 ‘ㅣ’는 마법 같은 존재다. 이웃한 모음을 자신과 닮도록 변화시키는 가 하면 자음도 제멋대로 바꿔버린다. 또 ‘ㄴ’음을 불러들여 음운변화를 유도한다. ‘ㅣ’모음동화(전설모음화), 구개음화, ‘ㄴ’음첨가가 그것이다. 또 두 음법칙에서도 ‘ㅣ’모음의 유무에 따라 초성이 바뀐다. 이러한 음운현상은 ‘ㅣ’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구강의 앞부분과 입천장과 가까운 위쪽에 위치하다 보니 생기는 것이다. 변화시켜 발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기 때문인데, 다른 언어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다양하게 일어난다.²¹⁾ 이러한 것들이 모두 훈민정음 창제와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17세기 들어 구개음화가 생기는 등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화가 일어나, 표기와 발음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ㅣ’모음동화

‘ㅣ’모음동화는 ‘ㅣ’모음이 앞뒤에 있는 모음에 영향을 줘서 ‘ㅣ’모음을 첨가시키는 것이다. 발음할 때 다른 모음과 ‘ㅣ’모음이 앞뒤 음절에서 만나면 혀가 맨 앞과 맨 위로 이동하고나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데 ‘유난히’ 힘이 들게 마련이다. 발음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음절도 ‘ㅣ’모음과 닮도록 변화시켜 발음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ㅣ’모음동화 현상이다. 그 양상은 2가지다. 뒤의 음절이 앞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를 순행동화라 하며, 앞의 음절이 뒤의 ‘ㅣ’모음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은 역행동화라고 한다. 역행동화의 경우 ‘ㅣ’모음 앞 음절의 ‘ㅏ, ㅑ, ㅓ, ㅕ’가 그 영향을 받아 혀의 위치가 조금 앞으로 나와 발음되는 ‘ㅐ, ㅒ, ㅖ, ㅘ’가 되는 것이다.

21) 서양 언어에서도 ‘ㅣ’계열 모음 앞의 경구개음이나 치조음이 연구개음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을 일부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g.c가 보통 ‘a.o.u’앞에서는 ‘ㄱ, ㅋ’로 발음되는데 전설모음인 ‘i.e’ 앞에서는 ‘ㅈ, ㅊ(ㅈ)’로 발음되는 것이다. 영어의 general[제네럴], 프랑스어의 gypsy[집시], 이탈리아어의 dolce(dolce), 영어의 center[센터] 등을 살펴보면, 예외가 없지 않지만 자음의 발음이 전설모음 앞에서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Would you~’를 ‘우듀’가 아닌 ‘우쥬’로 발음하는 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개음화 현상이다. ‘우쥬’가 일반적이라 해도 이것을 법칙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 ① 고기→괴기, 손잡이→손잡이, 어미→에미, 학교→핵교, 죽여→적여,
차여→채여
- ② 꼬창이→꼬챙이, 남비 →냄비, 멧쟁이→멧쟁이, 풋내기→풋내기
- ③ 되어→되여, 피었다→피였다, 하십시오→하십시오

①은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괴기’처럼 역행동화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표준어가 아니다. 그러나 ②처럼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 등 사용되는 정도가 광범해서 이미 어엿한 표준말로 올라선 것들도 있다. ③은 순행동화의 사례로 발음은 인정될 수 있으나 표기만큼은 표준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어는 이런 순행동화 결과를 표준말로 인정하고 있다.

노랭이, 아지랑이, 점쟁이, 땀장이 등 ‘ㅣ’모음동화가 일어났거나 일어날 조건을 갖춘 단어의 발음과 표기에서 뭐가 표준어고 비표준어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이런 현상이 예견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이후 많아지기 시작해 현대 국어에서 발음과 표기에서 혼란이 점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 구개음화

17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구개음화도 ‘ㅣ’계열모음의 조화로 일어난다. 이는 잇몸소리(치조음) ‘ㄷ, ㅌ’이 모음 ‘ㅣ’계열 모음(‘ㅣ’와 ㅏ ㅑ ㅓ ㅕ ㅛ ㅠ ㅟ ㅡ 등 ‘반모음 ㅣ’가 들어 있는 모음) 앞에서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인 ‘ㅈ, ㅉ’로 바뀌는 현상이다. 경구개음 ‘ㄱ’이 ‘ㅣ’모음 앞에서 연구개음 ‘ㅈ’으로 변하는 것(기름→지름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것도 ‘ㅣ’모음이 입천장과 가까운 곳에서 소리 나기 때문에 치조음(ㄷ계열)과 경구개음(ㄱ계열)이 이와 잘 어울리는 연구개음으로 변하는 것으로 발음의 경제성을 위한 것이다.

예전에는 ‘똥다, 디다’였던 것이 ‘쫘다, 지다’로, ‘뉥국’[中國]이 ‘중국’으로 각각 바뀐 것은 표기법까지 달라진 것이지만 대부분은 발음법에만 적용되고 있다. 특히 받침 ‘ㄷ, ㅌ’ 뒤에 ‘-이, -히’ 형태의 조사나 접미사가 나오는

경우 예외가 없다.

한글의 독음과 관련, 다른 언어와 달리 두드러지게 구개음화가 법칙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글을 어렵게 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훈민정음이 창안될 당시에 정해진 원칙이 아니다. 발음과 표기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정확한 구사에 혼란을 수반하게 된다. 실제 구개음화의 법칙성이 비교적 뚜렷하지만 이를 잘못 알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가사에 들어간 ‘결으로’를 가수 김건모나 김정수는 [겨트로]로 발음했지만 안치환은 [겨츠로]로 노래하고 있다. 김동현 가수도 ‘결을’을 [겨출]이라고 발음하는 것으로 보아, 구개음화에 대한 내국인들 올바른 인식이 적잖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글은 올바로 읽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ㄴ’을 첨가시키는 ‘ㅣ’

- ① 나뭇잎, 물약, 한여름, 담요, 색연필, 솜이불, 종합예술
- ② 금융, 검열, 야금야금

‘ㅣ’계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받침을 가진 음절과 결합하는 경우 발음상 흔히 ‘ㄴ’이 첨가된다. ①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물약의 경우 ‘ㄹ’첨가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ㄴ’이 첨가돼 유음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또 ②번은 표준발음법상 연음하거나 ‘ㄴ’을 첨가해 발음하는 것 둘 다 인정되는 예다.

이런 단어에서 첨가되는 ‘ㄴ’의 음가는 ‘나무’ 등 단모음 ‘ㅏ, ㅑ, ㅓ, ㅕ’ 앞에서 소리 나는 치조음 ‘ㄴ’과 다르다. 여린입천장(연구개)에서 나는 일종의 연구개음으로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음도 [윤서결]이 원칙이지만 [윤성녘]로 ‘ㄴ’을 첨가해서 발음하는 것도 통용될 수 있다.²²⁾ 국립국어원은 표준발음법 제29항 규정을 들어 이같이 해석한 바 있다.

22) 이름의 ‘-열’에 들어간 모음 ‘ㅕ’가 반모음 ‘ㅣ’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두음법칙에 끼어드는 ‘ㄴ’

두음법칙은 초성에 오는 자음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초성에서 ‘ㄹ’은 ‘ㄴ’으로 바뀐다. 그런데 그 ‘ㄴ’이 ‘ㅇ’으로 바뀌는 일도 있다. ‘ㄴ’ 때문이다. 우리 조상들은 첫소리로 ‘ㄹ’을 소리 내는데 매우 불편해했거나 인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ㄹ’대신 ‘ㄴ’으로 편하게 발음했다. 그런데 첫음절에 ‘ㄴ’이 들어간 글자가 반모음 ‘ㅇ’이 들어간 복모음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ㅠ, ㅠ’나 ‘ㄴ’과 결합할 때도 발음에 어려움을 느낀 듯하다. 이들 모음과 ‘ㄴ’을 그대로 발음하면 여린입천장에 혀가 붙었다가 떨어져야 하는 노력이 좀 더 들기 때문이다. 즉 발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①, ②처럼 한 자어에서 온 글자를 고쳐서 발음하기 시작했다.²³⁾

- ① 첫소리 ㄹ : 내일, 노동, 누각, (ㄹ→ㄴ); 양심, 여행, 요리, 유성, 이력, 예절(ㄹ→ㄴ→ㅇ)
- ② 첫소리 ㄴ : 여자, 요소, 유대, 익명(ㄴ→ㅇ)

4. ‘ㄹ’의 존재

‘ㄹ’은 본래 2가지 소리를 갖고 있다. 받침으로 쓰일 때와 모음 뒤나 첫음절 초성으로 쓰일 때의 음가가 다르다. 받침으로 쓰일 때는 영어의 [l]과 같지만 이것이 연음되면 [r]로 변한다. 그런데 [r]로 발음해야 할 초성을 [l]로 잘못 발음하는 수가 많고 반대로 [l]로 발음해야 할 때 [r]로 소리 내는 일이 허다하다.

또 소리가 다른 자음과 잘 어울리지 못해 종종 만나는 자음들을 변화시키고 만다. ‘ㄹ’받침 뒤에 오는 초성을 된소리로 나게 만들거나 ‘ㄴ’과 부딪치면 스스로 변하거나 ‘ㄴ’을 자신과 같은 ‘ㄹ’로 변화시킨다. 발음 문제에서 ‘ㄹ’의 변칙성은 가위 독보적이다.

23) 19세기부터 나타나 1933년 맞춤법통일안에 반영되었다. ‘년, 리’ 같은 의존명사나 ‘냥, 녀석’ 같은 토박이말에 예외가 존재한다. 이밖에 복합어나 첩어 등의 경우 예외가 다수 존재해 한글 표기를 까다롭게 한다.

- ① ‘갈게’, ‘할걸’, ‘잘 거야’, ‘할 수밖에’, ‘죽을지언정’
- ② 발달, 발신, 발전²⁴⁾
- ③ ‘기달려’*, ‘뭐 할려고?’*, ‘땀래야’*
- ④ 노름/놀음/눔, 어름/얼음/엷; 시들펍(시드름-*), ‘산 지’(살은-*),
- ⑤ ‘서툴러’(-툴어*), ‘머물렀던’(-물었-*)
- ⑥ 난로, 인류, 광한루, 대관령; ‘할는지’, 딸내미,
- ⑦ 공권력, 상견례, 생산량, 입원료
- ⑧ 녹록, 장롱, 고랭지, 합격률, 출산율, 반나체, 비논리적, 중노동
- ⑨ 멜론(메론*), 플러스(프러스*)

①은 어미에서 ‘ㄹ’받침 뒤에 오는 ‘ㄱ, ㅅ, ㅈ’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예다. 이것은 ②처럼 한자어에서도 나타나는데 ‘ㄷ, ㅅ, ㅈ’앞에 ‘ㄹ’이 있으면 이런 자음은 된소리로 난다. 이유는 받침으로 쓰인 ‘ㄹ’은 윗잇몸(입천장)에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이때 빠른 속도로 다른 자음을 발음하는 위치로 이동하려다 보니 혀가 긴장될 수밖에 없어 된소리를 유발하는 것이다.

③은 모음 뒤 초성의 ‘ㄹ’이 원래 음가 [r] 대신 설측음(혀옆소리) [l]로 소리 낸 것이다. 언중의 일관되지 않은 발음 습관에서 나온 결과다. ④에서는 어간에 ‘ㄹ’받침이 들어간 동사가 활용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원래 이런 동사나 형용사가 ‘-ㄹ’을 통해 명사로 전성되려면 ‘-ㄹ’받침 형태로 변해야 한다. 그중 예외로 존재하는 것들이 노름과 놀음이며, ‘시드름’처럼 쓰면 틀린다. 또 ‘살다’ 같은 동사는 예전에 어간의 ‘ㄹ’ 탈락을 근거로 불규칙 동사로 분류됐으나, 예외 없이 탈락이 일어나 이제는 규칙동사로 취급되고 있다. 언중이 원칙에 투철하지 않다 보니 ‘살은’ 식으로 말하고 표기하는 일이 아주 흔하다. 여기에는 ‘놀음’, ‘즐음’ 같이 예외적인 명사화 형태가 존재하기에 원칙을 습득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⑤는 같은 의미지만 형태가 2가지로 존재하는 동사의 예다.²⁵⁾ 즉 규칙(머물다)과 ‘르불규칙’(머무르다) 형태인데, 규칙동사(서툴다, 머물다)의 경우 ‘-어(였)’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지 못한다는 맞춤법 규정이 있

24) ‘발걸’처럼 ‘ㄱ’ 앞에서는 경음화가 안 일어난다. 토박이말과 한자어와의 차이이다.

다. 어려운 규정이다. ‘ㄴ’과 ‘ㄹ’은 상종하기 힘든 배척 관계다. ‘ㄴ-ㄹ’이든 ‘ㄹ-ㄴ’이든 이것이 받침과 초성으로 만나서 독립적으로 음가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발음이 변하다보니 ‘할른지’처럼 표기 실수도 잦다.

⑥은 ‘ㄴ’이 ‘ㄹ’로 변하는 것(유음화)이고 ⑦은 ‘ㄹ’이 ‘ㄴ’으로 변하는 예(비음화)다. ⑧은 ‘ㄹ’이 들어간 한자어의 두음법칙에 관한 예이고 ⑨는 외래어표기법에 구분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몰라서 혼용하는 사례다.

영어에는 이런 음운현상이 없는데, 국어에서는 왜 생기는 걸까. 결국 발음 경제성을 지나치게 좇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ㄹ’의 불안전성 문제로도 볼 수 있다.

5. 비슷비슷한 발음과 글자 모양

한글의 글자 모양이 외국인에게도 매우 아름답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태국어 문자나 타밀어 문자 모양도 비슷비슷한 예가 여럿 있고 굳이 말하자면 영어도 b,d,p 같은 철자가 왕초보 학습자에게 헛갈리는 형태다.

외국인으로서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과학적 창제 원리를 안다면 글자를 훨씬 쉽게 익힐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몇몇 비슷한 글자 모양에 혼란스러워한다. 문제는 한국인도 헛갈리는 형태가 있어 맞춤법 실수를 곧잘 저지른다는 것이다.

바로 ‘개’와 ‘께’다. 두 모음은 구강 안에서 혀의 위치를 각각 ‘ㅏ’, ‘ㅑ’보다 앞으로 또 살짝 위로 이동해서 소리 내는 것이다. 영어에서 ‘개’[æ]와 ‘께’[e]에 해당하는 철자가 ‘a’, ‘e’ 등 형태 구분이 확실한 것과 비교된다. 프랑스어에서는 이를 굳이 구분하기 위해 모음 위에 악상 그라브(˘), 악상 테귀(˙)라는 기호를 붙여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발음과 글자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 이 두 가지 모음이 혼용되는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요즘 학교에서 이의 차이에 대한 발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표기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현대 국어에서 이 두 모음을 정확하게 분별

하여 쓰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 젊은 세대일수록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해 보이는데, 이들의 문자 대화나 인터넷 댓글을 보면 기본적 어휘(모래-모레)부터 사용 빈도가 낮은 단어(사래-사레)에 이르기까지 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 ① 널 모래(-레*), 알맹이(-멩-*), 사십구재(-제*), 천도재(-제*), 헝가래(-레)
- ② 걸레(-래*), 돌맹이(-맹-*), 멜빵(멜-*), 삼우제(-재*), 허드레(-래*)
- ③ 노래지다(-레-*), 누레지다(-래-*), 쟁기다(쟁-*), 갠 밥 먹었대(-데*)
전화해도 없데(-대*), 돈이 없네(-내*), 요컨대(-데*)

①은 ‘ㄱ’가 잘못 쓰인 경우이고, ②는 ‘ㄹ’로 쓰면 틀린다. ③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미 유형인데, 이를 완벽히 구별해 쓰는 사람이 드물다. 이 때문에 이런 모음이 들어간 이름을 분명히 말해야 할 때 사람들은 ‘아이(ㄱ)’ 또는 ‘어이(ㄱ)’라고 풀어서 말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웬’와 ‘웬’의 쓰임새가 헷갈리는 것도 여기서 유래한 것일 수 있다. 사람들이 습관상 두 모음 발음을 뚜렷이 구분한다면, 또 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면 표기 실수를 덜 수 있으련만 현실은 탄판이다. 한글의 글자 모양을 바꿀 수 없다면 발음을 제대로 교육시킬 일이다.

6. 사투리와 북한어로 섞갈린다

한글을 배우는 데 외국인은 발음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말글살이를 하다 보면 표기상 겪는 어려움이 점점 커지는 수가 있다. 책에서 배운 말과 실제 언중이 쓰는 말이 다른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말이나 발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계된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사투리와 북한어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영어와 영국영어도 다르고 일부 표기가 다른 단어도 있지만 좁은 한반도에서 방언의 존재는 그 다양성에서 이를 능가한다.

표기와 발음에 대한 논의는 합성어까지 확장되어야겠지만 앞서 일부 받침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바 있어 별도 취급은 생략한다.

1) 비표준어

토박이말 가운데 맞춤법상 알맞은 것이 많다. 자음의 음운체계가 평음-격음-경음 3가지로 나타나며 모음이 다양한데다, 받침과 특정 모음의 영향으로 음운현상이 복잡다기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언중이 표준말로 알고 무심하게 사용하던 단어 가운데 사실은 비표준어여서 사전에도 안 나오거나, 사투리로 표시돼 있는 것들이 많다. 이런 예를 일일이 들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글을 통한 문자 생활에 편안한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물며 외국인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 ① 개구지다, 돋히다, 되값다, 뽕개다, 오돌뼈, 주구장창, 철사줄
- ② 걸빵, 꼬라지, 끄름, 뽕드락지; 놀래키다, 데피다, 시렵다, 야물딱지다

①은 비교적 널리 쓰이고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는 말이다. <고려대국어사전>에는 수록돼 있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표준말이라고 볼 수 없다. ②는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이지만 모두 비표준어다. 여기 소개한 말은 단어로서, 이의 규범성은 한국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비표준어, 즉 방언으로 쓰이는 말 중에는 어미의 발음과 표기 오류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의 ③이 이에 해당한다.

- ③ 좋고말구*(-고), 갓구만*(-구먼); 갈애*(-아), 바램*(-람)
- ④ 꺾불*(-불), 단출*(-출), 발가숭이*(-숭-), 소꿉놀이*(-꿍-), 장고*(-구), 파토*(-투), 호도*(-두)

③, ④는 모두 괄호 속의 글자로 교체해야 맞는다. 일반적으로 ‘ㅇ’와 ‘ㅏ’의 음가를 한국인이라면 그 생김새와 함께 확실히 안다, 그렇지만 정작 ④의 경우처럼 발음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변이된 모음을 표준말로 다시

익혀야 하는 수가 있고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다. ④의 사례로서 아직 표준말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부주, 사둔, 삼촌’ 같은 것들이 있다. 특이한 것은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ㄴ’, ‘ㄷ’의 발음을 가르치다 보면 의외로 ‘ㄴ’ 발음을 잘 따라하지 못해 애를 먹게 된다. 이들 두 모음은 원순모음으로서 그 차이는 혀의 위치에 달려 있다. 그런데 발음해 보면 ‘ㄷ’가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은 혀의 위치가 낮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혀를 제대로 낮추지 않으면 ‘ㄷ’ 발음이 나게 된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인들도 혀와 턱을 충분히 내리지 않고 입을 조금만 벌려 발음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실수하게 돼 있다. 즉 ‘삼촌, 사둔’처럼 게으른 발음을 하다 보면, 표준말(삼촌, 사둔)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한글의 모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혼란이 이런 원순모음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한글이 어렵다는 증가가 되고 있다.

2) 북한어

북한에도 표준어가 있는데 이를 문화어라고 한다. 우리의 표준어와 다른 대표적 차이점은 사이시옷이나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북한어는 표준어의 한 방언으로 볼 수 있는데, 예부터 표준어와 뒤섞이면서 표준어의 방어벽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ㅣ’모음역행동화다. 이 때문에 표준발음법 제22항은 [-어], [-이오] 등 용언의 어미 발음에서 [-여], [-이요] 식의 발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드디어’ 같은 단어도 [드디여]라고 발음해도 되는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 ① 옳바르다, 얼핏하면, 여직껏, 웬간하다, 깨어나다
- ② 갈래길, 발자욱, 엉덩이걸음, 장졸임, 통채

①, ② 모두 흔히 쓰이는 것이지만 북한에서 쓰이는 말로 우리 표준어 목록엔 들어있지 않다. ‘엉덩이’가 ‘ㅣ’모음역행동화로 변화한 ‘엉덩이’, ‘통째로’의 된소리가 거센소리로 적힌 ‘통채로’가 그쪽에서는 표준말이다. 또 음

식을 바짝 끓이는 것을 우리는 ‘조리다’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졸이다’로 쓰다 보니 장졸임이니 통졸임 같은 단어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자꾸 쓰이는 한 한글맞춤법의 규범력은 좀처럼 올라갈 수가 없다.

7. 기타 한글의 약점

한글의 대표적 약점으로 꼽히는 것은 순치음(f,v)이 없다는 것이다. 서양 언어를 표기할 일이 많은데 음가를 제대로 적어낼 수가 없다. 외국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영어학습 수준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순치음을 순음(표,브)으로 그냥 적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더 느끼는 듯하다. 그래서 이를 훈민정음 창제 이후 초창기에 쓰였던 순경음(빙,퐁)으로 표기하자고 주장이 대두된 지 오래다. 또 16세기에 사라진 유성마찰음 즉 반치음(Δ)을 [z]를 표기하는데 부활하자는 의견도 있다. 영어의 [l]과 [r]을 구분해서 쓰기 위해 [l]에 해당하는 음(설측음)을 ‘ㄹ로 쓰자는 의견도 있다. 실제 찌아찌아족은 이런 문자를 쓰고 있다(사진).

또 한글의 모아쓰기가 독창적이긴 해도 한글 세계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롤, 를; 흥, 흥’ 등 일부 글자는 음절의 밀도가 높아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하며 읽기 효율을 문제 삼은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문자 자체의 특성에다 표기 패턴으로 논의를 확장하면 한글의 약점은 더욱 도드라진다. 맞춤법 및 표준어규정상 예외, 외래어표기법에다 사 이시옷, 띄어쓰기 등 일부 형태-통사론적 영역으로 확장해 보면 과제가 만만치 않다. 특히 띄어쓰기는 한국어의 최대 약점이다. 자모가 음절을 이루고 음절이 단어를 이룬 다음 그 단어가 어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표기의 완성도가 결정된다. 그런 통사론적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의 상당수가 한글 표기의 최후 단계에서 엄청난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띄어쓰기는 예외도 많고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국어사전의 표제어 취급이 다른 이유도 여기 있다. 국문과 교수조차도 이에 완벽한 띄어쓰기 규정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맺으며

한글은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자산이라고 한다. 어쩌면 이를 통해 산업화도, 민주화도 앞당길 수 있었고,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 발자취를 남길 것이란 기대도 충분하다.

없어졌던 한글날이 부활하고 ‘한글 세계화’니, ‘훈민정음기념사업’이니 하여 한글에 대한 관심과 예찬이 식지 않고 있으나, 기대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탄판으로 허물어져 가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국어가 전반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양상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근저에 있는 한글의 정체성, 그 본질적 특성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본 논고는 음절 구성 방법부터 자모의 특성, 일부 음운법칙과 북한어까지 다양하게 고찰해 보았다. 전체적 내용은 엄격한 학문적 고찰을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의견을 이리저리 엮어놓은 것에 불과해,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비체계적이라는 비판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냉정한 성찰이 한글을 더욱 성숙한 문자로 보존, 혹은 발전시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믿는다.

한글을 종족 언어 표기 수단으로 가르치고 있는 찌아찌아족의 학교 현장을 2차례 방문해본 경험자로서, 한글의 세계화는 희망적이고 그렇게 나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훈민정음 반포 600주년 이전에 한글의 세계화를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중세에 사라진 문자를 부활하는 문제부터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한다.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어의 건강성이 회복, 유지되도록 언중의 일대 각성과 학습, 순화 노력이 뒤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발표3]

헌법상 문화 국가원리의 보장

장 용 근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홍익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교수

I. 서론

1. 문화 국가원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한글의 의미

‘문화국가’란 말은 학문적으로는 생소한 용어다. 그럼에도 어쩐지 가깝게 느껴진다. 중국의 인접국이면서 중국에 동화되지 않은 채 민족 정체성을 우리처럼 오랫동안 유지한 민족은 없다. 중국으로부터 많은 문화를 수용했지만 우리는 독창적인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등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제의 무단 식민통치에 반대했던 3.1 독립운동의 선언문을 읽어보아도 결론은 인본주의 전통에 의한 문화 창달의 열망으로 끝을 맺고 있다. 일생 동안 일제에 대항하여 무장독립투쟁을 주도했던 김구 선생도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부국강병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능력이 최고조에 달한 국가, 즉 문화국가라고 말했다. 그런 때문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문화민족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미래를 문화적 창조력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국가의 근거에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결정지는 언어인 한글이 그 근거에 있다고 보인다.

문화국가는 새로운 화두인 지식기반 국가와 호환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친숙하게 쓰일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¹⁾ 과거에는 자본, 노동, 토지 같은 하드웨어가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즉 지식, 정보, 문화 창조력이 경제의 핵심”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진단은²⁾ 이미 창의적 문화국가의 개념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르며 이런 의미에서 이 개념은 새로운 도전이자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뉘앙스의 친숙성에도 불구하고 문화국가의 개념은 아직 모호성이 크다.³⁾ 분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문화국가에 관한 관심이 태동하게 되는 배경과 문제의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화국가는 과연 무엇을 뜻하며 이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학적, 이념적 논의는 꼭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고 사회학적 현실 인식의 토대 위에서 문화국가의 위상과 정책수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국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개념에 대한 명료성이 성립되어야만 그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법학 분야에서 문화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인식 대상을 명확히 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cultu.e, Kultu.)라는 말은 경작하다 또는 돌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cultura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처음 이 말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가꾸고 돌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도야한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문화를 자연에 인간의 활동이 가해진 것으로 볼 때에는 문화란 사회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듯이 “사회 내의 전형적인 생활양식, 가치관 및 행위 양식을 총칭 “하는 것”⁴⁾일

1) ‘지식기반 국가’란 말은 딱딱하고 영어를 우리말로 옮긴 뉘앙스가 금방 드러나는 데 비해, 문화국가라는 말은 우리의 정서에는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러나 문화국가를 영어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 독일어로는 Kulturstaat란 말이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영어를 찾기는 어렵다. 마치 정신문화연구에 해당하는 독일어 Geisteswissenschaft는 있지만, 영어가 없어서 Korean Studies로 번역하는 것과 유사하다.

2) 김대중 대통령, 81주년 3.1절 기념사, 2000년, 8쪽.

3)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1998년도 연구보고서, <창의적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제안>에는 여러 유용한 아이디어가 있지만 정작 ‘문화국가’라는 핵심적 개념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조차 없는 것이 특이하다.

수밖에 없다.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문화영역에 속했던 생활영역 외에도 사회의 관념적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들이 포함되고, 그러한 한에서 교육, 학문, 예술, 종교 외에도 방송 신문, 저작권, 기념물과 문화재의 보호, 스포츠, 청소년 보호 등이 문화영역의 대상으로 된다.⁵⁾

인간은 정신적 능력을 통하여 동물과는 구별되며, 그러한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문화로 표현된다. 문화는 과학 및 기술과 함께 경제의 기반을 이룬다. 모든 사회적 영역이 국가 내에서 통합되면서 문화를 보호·육성·진흥·전수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이해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모든 문화의 영역이 자신의 고유 법칙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은 처음으로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고⁶⁾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법적인 차원⁷⁾에서 뿐만 아니라 각국 헌법에서도 점차 문화국가 조항을 명문화하기 시작하였다.⁸⁾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우리 헌법은 전문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문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을 근거로 국내에서는 문화국가 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데 대하여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고 보이나 다른 헌법의 기본원리와는 달리 문화국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⁹⁾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문화국가란 “문화의 창조 유지 발전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국가”로서 “경찰국가나 법치국가의 대립개념으로서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성립한 국가이념”을 가리킨다고 규정한다.¹⁰⁾ 우리는 여기서 국가

4) U. Stelner Kulturauftraß im staalichen Geineinwesen, #JJDStRL Hefl 42(1984). 5.51.(ff) 98. ff!rstlf7t

5) 김수갑,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28~29쪽

6) 바이마르 헌법 제18조 제1항: “라이히를 각 란트로 분할함에 있어서 국민의 경제 및 문화상의 최고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관계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한다.

7)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은 - 모든 인간은 사회 문화적 환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더욱 구체화한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문화적 권리의 인권성을 국제적 차원에서 선언하고 있다.

8)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독일의 경우 문화국가를 국가목표규정으로 고양시키려는 시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Bericht der ©achverst3n4genkoumisftfffFn(C) 2003 NuriMedia Co., Ltd.

9) 주로 김수갑교수님이 중심이 되셔서 논의하고 있는 듯 하다.

10) 국립어학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상권, 1999, 2295면.

이념으로서의 문화국가와 문화정책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문화국가를 발전목표라 한다면 정책은 수단이다. 수단과 함께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개념도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주체의 문제, 방법론의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¹¹⁾

2. 문화국가요소

문화국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통합된 민족의 존재와 이들 사이에 공유된 오래된 문화적 전통과 그 전제조건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유형문화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국가의 철학적 기반은 무형의 정신문화 전통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문화 전통을 가꾸고 재구성하는 다양한 교육, 토론, 훈련, 창작활동, 예술활동 등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품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인지적 도덕적 능력과 사회적 협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체계화될 때, 우리는 문화국가를 논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열린 의사소통의 구조에서 형성되는 문화국가는 공동체의 문화주권을 표현하는 것일 뿐 결코 문화독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반면 다인종 또는 다민족 사회는 자체의 이질성 때문에 문화국가를 지향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또 다른 자원은 넓은 의미의 문화재, 문화제도 및 문화시설이다.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유적, 사찰, 서적, 조각, 미술, 예술품 등을 보전, 관리하고 이를 매개로 한 문화교육, 문화관광, 현장체험 등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문화국가의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현대국가는 대부분 이런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문화국가라는 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11) 문화정책은 문화국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문화자원은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자산을 가리킨다. 짧은 역사, 긴 혼돈,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하여 문화자산이 빈약하거나 파편화된 경우에는 문화국가의 입지는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문화국가의 주체가 반드시 정부만을 상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위험하다.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시민사회가 할 일이 있다. 이에 따라 방법론도 사뭇 다른 구조와 특성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3. 비교법적인 검토

적극적, 소극적 문화국가의 지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던 나라는 독일이라기보다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1789년 혁명과 함께 왕실과 귀족이 소유했던 고급 문화자산들을 공공재산으로 편입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특한 제도와 과제를 혁명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강화했다. 또한 “교육, 언어, 예술” 등의 정책을 통하여 프랑스 민족의 문화적 우월성을 고양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이었다. 즉 혁명의 시대정신 속에 프랑스의 공세적 민족주의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원래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이 뒤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영미나 서구 국가의 자유주의적 또는 혁명적 계몽사상의 도전 앞에서 민족의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민족의 정신을 강조하는 수세적 학문 사조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아울러 봉건체제로부터 근대국가로의 경쟁이 일어남에 따라 바로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삼아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열망이 문화국가의 개념을 배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국가와 문화는 그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역사적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¹²⁾. ① 문화가 철저히 지배체계에 봉사하는 수단적 존재로 기능했던 근대이전의 시기, ② 시민제급의 성장과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문화가 국가로부터 자율성과 독자성을 획득한 시기, ③ 문화활동이 시장 법칙에 따르게 되면서 문화의 경제 종속성, 외래문화의 범람과 전통문화의 퇴조, 분화적 불평등의 문제가 생 겨나 건전한 문화의 육성과 문화적 불평등의 시정이 국가적 과제가 된 현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 따라 문화국가를 유형화시키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모델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¹³⁾. ① 문화에 대하여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이원주의적 모델(초기 미국의 경우). ② 문화적 국가목적과는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가 문화를 육성하는 공리주의적 모델(계몽군주국가지

12) 자세한 것은 O. erimD, Kulturauftrag des Staates, in: ders.,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자세한 1987, 5_104ff.: 김수갑, 전계 논문, 33면 이하 참조

13) 김수갑, 전계 논문, 44면이하.

대), ③ 문화 그 자체를 위하여 국가가 문화를 육성하는 문화국가적 모델(프로이센의 개혁 시대). ④ 정치적 기준에 따라 국가가 문화를 조종하는 지도적(후견적) 모델 (나치 독일의 경우)¹⁴⁾로 구분할 수도 있다.

II. 문화국가의 내용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1) 의의

문화적 자율성이란 문화 활동에 대한 국가의 문화 정책적 중립성과 관용을 의미한다. 문화의 본질적 특성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각 그 특성에 따른 창조적 발현이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은 그것이 세계관적이든, 학문적이든, 예술적이든, 종교적이든 또는 그 밖의 것으로 표현되는 핵심영역은 자율적이며, 자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문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 정책적 중립성과 문화 정책적 관용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곧 국가에게는 문화 정책적 명령과 획일화의 시도 또는 학문이나 예술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국가는 ‘불편 부당의 원칙’(r.inaip de. Nichtgerentit표))을 지켜 국가에 편리한 문화 활동에 대하여는 특혜를 주고, 불편한 활동에 대하여는 차별대우를 해서도 안 된다.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문화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이란 국가가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다거나 문화를 방기한다는 것, 곧 문화를 사회에 일임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에는 국가만이 아니라 사회집단도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 사회집단도 문화를 지배하고 조종하며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영역 쪽에서도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 또는 역할을 무시한 자의적인 문화 활동,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문화 활동은 다른 기본권 또는 다른 (헌)법적 법익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

14) 정치적 기준에 따라 국가가 문화를 조종하는 것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마르크스주의 국가에서의 예술에 대해서는 D. Kettler, Marrisrus und Kul-tur. 1968를 볼 것.

나 그러한 조치는 문화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 여건을 간접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적 조치는 문화의 자율성 보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으로 이해된다.

헌법상으로는 대학의 자치를 규정한 헌법 31조 4항의 규정이 예시적 규정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2) 주민참여 중심의 자치문화 행정

행정의 문화화를 위해서는 도시 행정체제를 시민자치형으로 변화시키는 행정문화의 개조와 도시 행정 전반에 걸쳐 문화성을 투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도시 행정이 기존의 행정방식을 반성하고, 자치로부터 재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독선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유연하고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의 창조 주체는 주민이므로 도시 행정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그들의 시각에서 도시 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활 행정, 지역 행정에서 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머지않아 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될 동사무소를 거점으로 하여 근린지역 단위에서의 커뮤니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시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 정체성 계획(CIP)과 도시 경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이들이 도시계획(재개발계획, 지구 상세계획, 도시설계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시문화가 도시경제를 진작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 계획과 도시경제활성화계획을 연계시킴으로써 수익성이 있는 문화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도시개발 시 건물 하나, 다리 하나를 건설하더라도 도시의 미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모든 개발사업비의 1% 정도를 도시문화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이른바 문화를 위한 1%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시 행정 전반에 확대·적용해야 한다.¹⁵⁾ 도시 행정의 문화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행정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기존 한국의 문화 행정에 대해 살펴본 후 문제를 인식하도

15) 김일태. “도시 행정을 문화화 해야 한다.” 문화 도시문화복지 1998년 8월 1일 자 43호

록 할 것이다. 그러한 선행검토 이후 한국 도시 행정의 문화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2. 언어문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서의 지원정책의 검토

(1) 의의

문화국가의 또 다른 내용은 국가에 의한 문화의 보호·육성·진흥·전수와 제한의 문제이다. 현대의 문화적 문제는 문화의 경제에의 종속성, 문화적 불평등, 제3세계의 문화종속 현상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율적·자발적 문화에 책임 있는 봉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문화에 대한 보호·육성·진흥·전수는 지도적(후견적)·공리적·간접적인 것이어서는 안되고 문화의 자율성을 고려한 지원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지원의 방법은 유 무형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금전적 보조, 문화창작에 대한 보조, 문화보급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보조, 문화적 발전을 돕기 위한 금전적 보조,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한, 문화의 보호·육성 - 진흥·전수의 대상에는 고급문화뿐 아니라 대중문화, 전통문화, 향의 문화 등 모든 사람의 문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적 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 활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그 방식에 따라서는 간섭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합리적 지원방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문가 집단에 평가를 위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의 대상과 정도를 확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전문가 집단의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그 조직과 절차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첨언할 필요도 없다.

(2) 문화적 권리의 보장

1) 문화 행정의 원리검토

① 개념: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문화 행정의 개념을 검토해 보자

저 자	개념 정의
정홍익(1992)	문학과 예술을 포함하여 국민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전통을 승계하기 위한 행정
이종인(1997)	문화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공권력의 배경하에 문화예술정책을 형성 내지 결정하며 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합동적 행위
정갑영(1994)	국가 단위가 추구하는 문화에 대한 이상적 목표를 국가 개입을 통하여 수행하는 과정
임학순(1998)	정부 등 공공기관이 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예술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술부문에 개입하는 일련의 행위 및 상호작용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와 관련된 공적 목적(공익)의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

문화 행정의 개념 비교 16)

이러한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문화예술 행정은 “정부가 공권력에 기초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적 업무(공공문제)를 수행(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행정의 문화화 의미¹⁷⁾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 행정이라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기존의 한 분야에 국한된 문화 예술성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여 행정의 문화화 특히 도시 행정의 문화화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문화예술과 관련된 방법을 기초하여 공적 업무(공공문제)를 수행(해결)하는 과정”이 도시 행정 문화화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집행의 영역을 초월한 종합정책으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영역에는 경관.수변.공원.가로.녹지.전원 등의 하드웨어 면을 포괄하는 생활환경 전반까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평생학습을 포함하여 예술의 장려와 보급에 이르는 문화 전반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행정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역문화의 진흥은 소수의 문화 엘리트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며, 행정의 역할은 그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문화창조의 조건 정비는 문화화된 행정에

16) 이중환,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2000)

17) 이하는 강형기(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월간 문화도시 문화복지. 기획칼럼 81호 “행정의 문화화”(http://www.kctpi.re.kr 11월 15일 발채 참조)에서 요약 발췌한 내용임.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행정이 문화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문화 행정을 기반으로 성립된 행정의 문화화라는 개념은 바로 문화 행정의 문제점 해결에서 확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보장의 원리의 실현 수단적 검토-예산지원의 문제

2000년도부터 정부 일반회계예산안 가운데 문화예술예산이 1조가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문화예산 1% 시대가 되었다¹⁸⁾. 물론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문화적인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정부는 이 욕구를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국민과 시민의 삶 가운데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면, 문화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문화예술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문화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시각과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즉 일부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문화예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사치요, 배부른 자들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렇다 보니 예산심의에서 문화예술 항목이 제일 먼저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소극적인 인식으로 문화예산에 대한 삭감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2001년 문화예술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하드웨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지방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회관 신축이나 구입 등에 상당 부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문화예산 1% 시대에 한 번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예산이 중요한 이유는 국가가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8)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pb.go.kr/>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하였기에 예산의 중요성은 권리의 실질화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이 행정부의 의사에 따를 경우 행정부의 자의에 의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여 예산의 책정과 집행이 사실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국가의 수입 및 지출은 국민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 규율하여야 하며 이것이 재정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행정부와 달리 국회는 공개되고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을 법률로써 볼 수 있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며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일관된 심의·결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의원의 자질과 보좌관들의 자질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선심성 공약과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향후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전제로 한 문화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한글의 우수성을 발전시키고 해외에 알리는 예산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개된 의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화와 토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현재의 저 효율적인 문화예술시설을 전제로 전시행정의 지방정부 문화정책을 개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형태에 의해서 한글을 전제로 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화하는 데 능률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Ⅲ. 우리 헌법상에 구체화된 문화 국가원리와 개헌 시 고려사항

1. 현재의 헌법규정

우리 헌법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문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문화국가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 잡고 있다.

첫째,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이라는 표현을 통해 문화국가의 이념을 선언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는 표현을 통해 문화영역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

둘째,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69조에서는 대통령에게 취임 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은 문화 국가원리를 선언한 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은 국가목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비록 이 규정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문화 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¹⁹⁾

셋째, 전통적으로 문화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학문, 예술, 교육, 종교를 학문의 자유(제22조), 예술의 자유(제22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²⁰⁾와 같이 문화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문화적 자율성의 기초가 되는 양심의 자유(제19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 나아가서 그 전제 조건으로서 환경권도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넷째, 그 밖에도 사회의 관념적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 곧 방송, 신문, 저작권, 기념물 및 문화재의 보호, 스포츠, 청소년 보호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곧 언론·출판의 자유(제2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제22조 제2항), 전통문화의 계승(9조), 연소자의 근로보호(제32조 제2항)와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제34조 제4항) 등이 그에 해당된다²¹⁾.

19) 김수갑, 전계 논문, 134면, 대중문화에 대한 민족문화, 전통문화의 우선적 보호라는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른 차별은 적어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별이 문화·정책적으로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이 규정이 결코 민족 지상의 국수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김수갑, 전계 논문 135쪽은 이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곧 국가의 자제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집중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인 문화국가 조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제안이 그것이다. 정당한 지적이자 적절한 제안이라 생각된다.

20)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다”(헌법재판소 1991년 2월 11일 결정, 90헌가27,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11면, 특히 18면).

21) 김수갑, 전계논문, 127~128면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을 문화와 관련된 조항으로 보고 있다.

2. 개헌 시 고려사항 - 한글에 기초한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고려하는 개헌의 완성

현행 헌법 9조의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국가는 한글에 기초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세계문화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이는 문화국가 원리의 전제조건인 한글이 전통적으로 문화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학문, 예술, 교육, 종교를 학문의 자유(제22조), 예술의 자유(제22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²²⁾와 같이 문화 기본권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는 수많은 가수들이 영어로 노래하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한글과 영어 동시자막 내지는 한글을 전제로 한국의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권의 전제로서의 한글의 우수성

우리 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2항 이하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초등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성,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 교육제도와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²³⁾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와 광의의 개념을 구분하여 전자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락권으로, 후자

22)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이다”(헌법재판소 1991년 2월 11일 결정, 90헌가27, 헌법재판소 판례집 제3권 11면, 특히 18면).

23) 김철수, 전계 논문, 670면

는 수확권뿐만이 아니라, 학부모가 그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제공청구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²⁴⁾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저수준의 문맹률을 달성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간결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4) 권영성, 전계서, 611면

[발표4]

「훈민정음 법」 제정 관련 학술토론회
• 주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주관 : (사) 훈민정음기념사업회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발표자료

세종 창제의 훈민정음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한 소고

2022. 12. 14.

전 병 제 / 한얼경제사업연구원장

차 례

- I. 발제 / 세종 콘텐츠와 초정 / 01
- II. 초정 일원 현재·장래 공공개발사업 / 06
- III. 초정의 과제 / SWOT 평가 / 12
- IV. (예시)초정 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모델 / 16
- V. 정책 건의 / 20

I. 발제 / 세종 콘텐츠와 초정

1. 발표 주제의 목적

- 청주 초정(椒井) 공간은 세종대왕(世宗大王) 콘텐츠와 초정광천수라는 세계적 가치의 2대 테마를 복합한 유적복원, 치유마을, 기존 지역개발사업, 훈민정음대탑, 세계문자공원 등 공공·민간의 대규모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가 계획되고 있음
- 오늘 현안인 「훈민정음법」 제정 촉구 및 국가 차원의 초정 개발 지원요청"과 관련하여 제3자 입장의 2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국가지원을 요구하는 세종·훈민정음 콘텐츠가 어떤 이유에서 초정인가
 - 초정의 문화·관광 생태계가 과연 자립적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가
- 본 발제는 기존의 학술적 연구성과와 현장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 기록상 입증할 수 있는 세종·훈민정음 콘텐츠와 초정의 역사적 연고
 - 청주의 민·관이 초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 초정 문화·관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광자원 및 그 사업적 잠재력 등을 소개하고 논의함으로써 세종·훈민정음 콘텐츠 및 초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새롭게 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당위성 및 추진 방법론을 입법기구와 공유하고자 함에 기본목적이 있음

- 1 -

I. 발제 : 세종 콘텐츠와 초정

2. 조선실록(세종)으로 본 세종과 초정

초정 행차가 휴양 명분 속 계속된 훈민정음 창제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추정

- 1397년 05월 15일 이도(李祐 / 충녕대군) 탄생(태종 6남 / 앞의 3명 사망으로 3남)
- 1418년 08월 10일 (태종18년) 조선 제4대 국왕 즉위(세종1년)
- 1443년 12월(음) 훈민정음 창제(세종25년)
- 1444년 02월 15일 청주(淸州)에서 초수(椒水) 발견 보고
- 1444년 02월-03월 초정 행궁 축조(왕의 직접 지시로 최소 규모화)
- 1444년 03월-05월 1차 초정행차 : 03월 17일 한양 출발 → (3박5일) → 03월 22일 초정 도착 (60일 체류) → 05월 20일 초정 출발 → (4박5일) → 05월 24일 한양 도착 / 총 69일 소요
- 1444년 08월-11월 2차 초정행차 : 08월 28일 한양 출발 → (5박6일 / 추정) → 09월 03일 초정 도착 → (60일 체류) → 11월 01일 초정 출발 → (4박5일) → 11월 05일 한양 도착 / 총 70일 소요
* 1차+2차 총 행차기간 139일, 초정 체류기간 120일
- 1446년 09월(음) 상순 훈민정음해례본 완성(반포로 해석 / 세종28년)
- 1448년 04월 30일 초정행궁 농민 방화로 전소 / 방화범은 체포됐으나 왕의 지시로 석방
- 1450년 03월 30일 서거(향년 52세)

- 2 -

I. 발제 : 세종 콘텐츠와 초정

3. 초정행차 기간 중의 세종과 훈민정음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상소문에 나타난 초정에서의 훈민정음 다듬기

□ 세종실록103권(세종26년) / 1444년 03월 09일

○ 且今淸州椒水之幸, 特慮年
 歉, 屬從諸事, 務從簡約,
 比之前日, 十減八九, 至於
 啓達公務, 亦委政府。
 若夫諺文, 非國家緩急不得
 已及期之事, 何獨於行在而
 汲汲爲之, 以煩聖躬調變之
 時乎? 臣等尤未見其可也。

또한 이번 청주 초수리(椒水里)에 거동하시는 데도 특히 연사(농사)가
 흥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종(모시기)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오면 (행차 부담이) 10에 8, 9는 줄어들었
 고, 계달하는 공무(公務)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議政府)에 맡기신
 바, (중차대한 국사는 이렇게 하시면서) 언문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
 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맞춰야 할 일도 아닌데, 어찌 이것만은 행재소
 (行在所/행궁)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상의 몸을 조섭(돌보다)해야
 함에 불구하고 (오히려)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신 등은 더욱 그 옳음
 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초정은 갓 창제된 훈민정음의 완성도를 집중 제고한 시간이며 산실

- 3 -

I. 발제 : 세종 콘텐츠와 초정

4. 초정 일원의 왕실 재산

세종 당시와 초정의 밀접함을 나타내는 조선왕실 재산의 분포 증거

□ 일제 토지대장에까지 나타나는 초정 일원의 궁장토(宮庄土)

- 초정 원탕구역 및 주왕리(住王里) 일원 등에 대
 한 1912년 일제 토지대장 및 1913년 지적도에
 소유주가 창덕궁(昌德宮) 또는 경선궁(慶善宮)
 인 다수 필지 존재 / 약 1천만평 추정
 - 창덕궁 : 경술국치 후 이왕직(李王職) 소유
 - 경선궁 : 영친왕 모친 순헌황귀비의 궁호.
- 당해 토지 대부분은 동양척식회사로 넘어갔다
 일반에 불하되었거나 국유로 환수
- 청주의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궁장토(宮
 庄土 : 궁에 딸린 토지)로서 세종조부터 초정
 일원에 대규모 왕실재산이 이어져 왔음을 시사

- 4 -

I. 발제 : 세종 콘텐츠와 초청

5. 초청의 원본자산(原本資産)과 가치 잠재력

초청의 2대 원본 자산과 잠재력	세종 스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 스토리 : 세계 최고의 과학문자인 훈민정음의 재야 창제 산실 - 창제 과정의 고통과 질환을 초청에서 휴양하며 초청수로 치료 - 세종 리더십을 가족단위 밥상머리 생활교육 체험과 연계 - 훈민정음의 우주적 문자원리를 또 하나의 한류로 초청공간에 구현
	브랜 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3대 광천수 중 하나"라는 강력한 각인 효과 - 초청수와 초청 공간에 대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음 용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네랄을 함유한 탄산광천수로서 맛·수질·수량 양호 - 초청권내 일반 지하수도 우량 생수로서 사업화 활용 검토
	입 지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중심 접근성, 수도권과 신수도권 2천5백만 배후시장 - 20분내 청주국제공항 연계 → 초청의 세계화 기반 역할
	테마집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궁, 초청치유마을, 세종창의마을, 태교랜드, 훈민정음대탑 등 - 수(水)치료 산업과의 복합을 통한 단지 활성화 전략 유리
	마 중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청수 기반 치유문화클러스터 사업비 확보 및 사업 실행 중 - 청주시 민·관의 초청 개발의지에 대한 시장 신뢰도 증가

- 5 -

II. 초청 일원 현재·장래 공공개발사업

1. 초청클러스터 관광 육성사업

✓ 위치 :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일원 (면적 : 37,561㎡)



위치도



지구단위계획도

- 6 -

Ⅱ. 초정 일원 현재·장래 공공개발사업

1.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사업

- ✓ 사업비 : 24,950백만원(국비 : 91억, 도비 27.3억, 시군 : 131.2억원)
-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24,950		
초정치유마을	21,180	• 초정광천수를 이용한 물 체험센터 건립 → 체류형 치유 관광 프로그램 운영	수(水) 치료 · 스파, 명상 프로그램 등
세종창의마을	850	• 초정행궁 내 · 외부 시설(침전 · 편전 · 왕자방 등) 활용, 세종대왕의 창의교육 콘텐츠(프로그램) 운영	과학 체험시설 등
초정광천수 보전	620	• 지하수 전수조사를 통한 초정광천수 보전 관리 구역 • 지하수보조관측망 5곳 설치, 천연기념물 지정 등	하수정책과 예산 재배정
산업시설 관광자원화	100	• 근대 물 산업시설 관광자원화 방안 및 지역주민과 연계한 산업관광 등 연구 구역	
청주시 ~ 증평군 광역연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200	• 증평 좌구산 ~ 초정리 연결 이음길 조성 사업 • 초정 홍보 마케팅(BI개발 / 물 포럼 / 홍보품 제작 등) 시범사업 선정(2019. 4. 5)	증평군 사업 예산 1,800 포함

- 7 -

Ⅱ. 초정 일원 현재·장래 공공개발사업

2. 초정 행궁사업

▪ 사업개요

- ✓ 부지규모 : 37,651㎡
- ✓ 주요도입시설 : 침전, 편전, 정전, 왕자방, 수랏간, 독서당, 원탕행각, 전통 찻집, 홍보관, 한옥, 체험관 등
- ✓ 사업비 : 165.7억원(국비 : 47.5억원)
- ✓ 관리운영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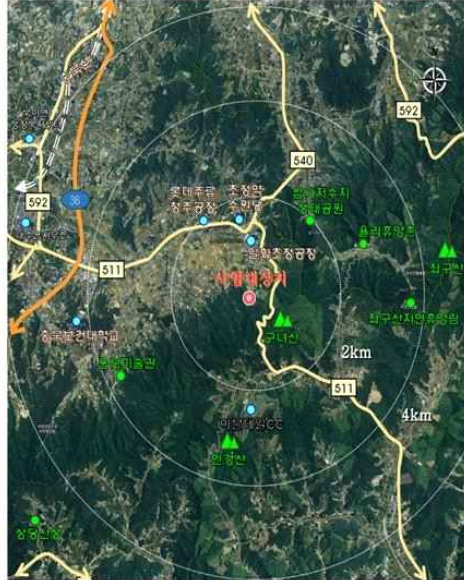
- 8 -

II. 초정 일원 현재·장래 공공개발사업

3. 태교랜드사업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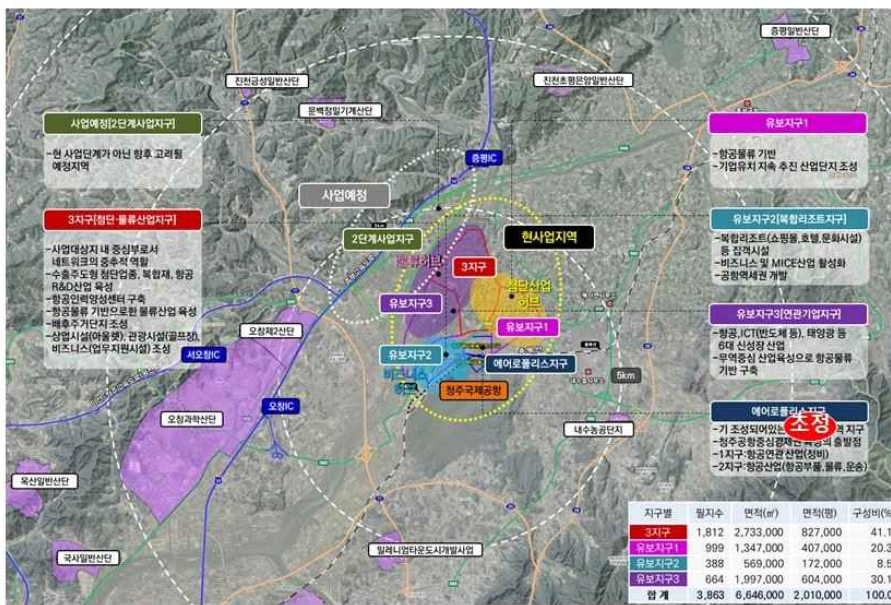
- ✓ 사업명 :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사업
- ✓ 위치 : 청원구 내수읍 우산리 46-1
번지 일원
-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 ✓ 사업규모
 - 문화공원 : 24,771㎡, 진입도로 : 4,213㎡
- ✓ 총사업비 : 207억원
 - 문화공원 : 187억원 (국비 83.5억원, 도비 16.7억원, 시비 66.8억원)
 - 진입도로 : 20억원 (시비 20억원)
- ✓ 사업내용 : 태교건강관, 태교영유아관, 세계태교전시관, 테마공원 등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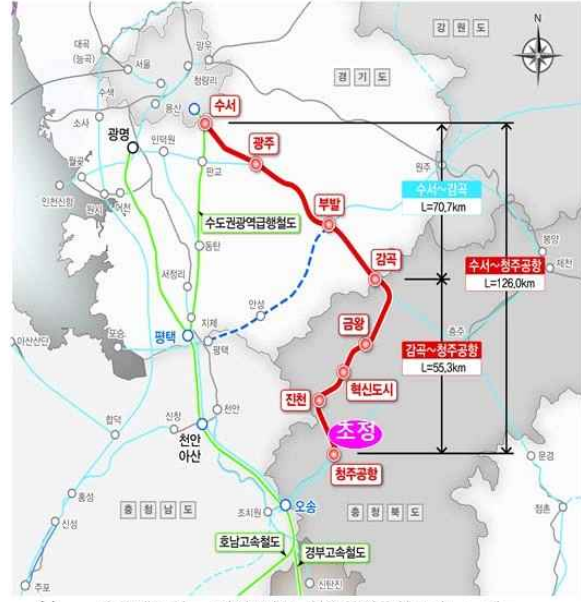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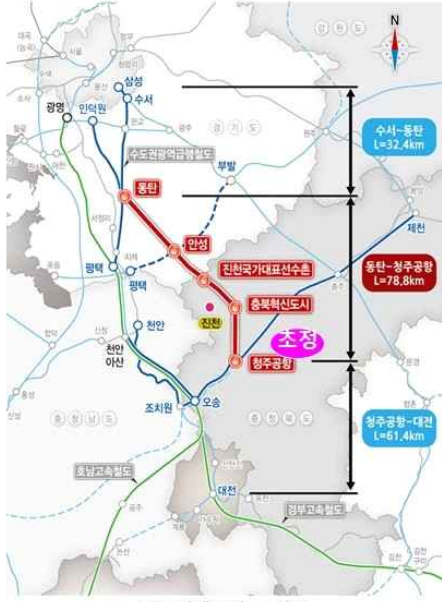
II. 초정 일원 현재·장래 공공개발사업

4. 청주국제공항 경제권사업 : 공항복합단지 개발구상



Ⅱ. 초정 일원 현재·장래 공공개발사업

5. 청주국제공항 연계 인프라 사업



Ⅲ. 초정의 과제 / SWOT 평가

1. 미래비전 관점의 초정 평가

기존논리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이며, 치료효과 탁월"	
현실진단	초 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량·양질의 수맥임은 사실이나 전국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탄산 광천수로 초정만의 차별적인 특성 내지 치료효과 주장은 무리
	치유 클러스터 개발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자원 역량만으로는 안정적 수요 담보 취약 - 초정수의 사유화·난개발·과이용으로 지속가능성 저하 - 자연환경 또는 관광인프라 측면에서 치유 요소 불충분
준비없는 초정개발 추진시의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정이 가진 현재 정도의 자원 역량을 기반으로 기본계획과 같은 치유문화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국 다수 지자체가 내세우는 유사한 힐링·치유 테마 관광지와의 차별적 경쟁력 확보 및 대규모 관광수요 유발 가능성 불투명 - 클러스터 단지 전반의 사업성 기반 미흡 및 추가 투자재정 확보 불확실 - 천연기념물 지정 및 특구 신청의 추동력 부족 결과적으로 공공재정을 마중물로 초기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자생력 확보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이 경우 기존처럼 초정단지의 하드웨어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재정(세금)의 지속적인 추가 부담 가중 우려 	

Ⅲ. 초정의 과제 / SWOT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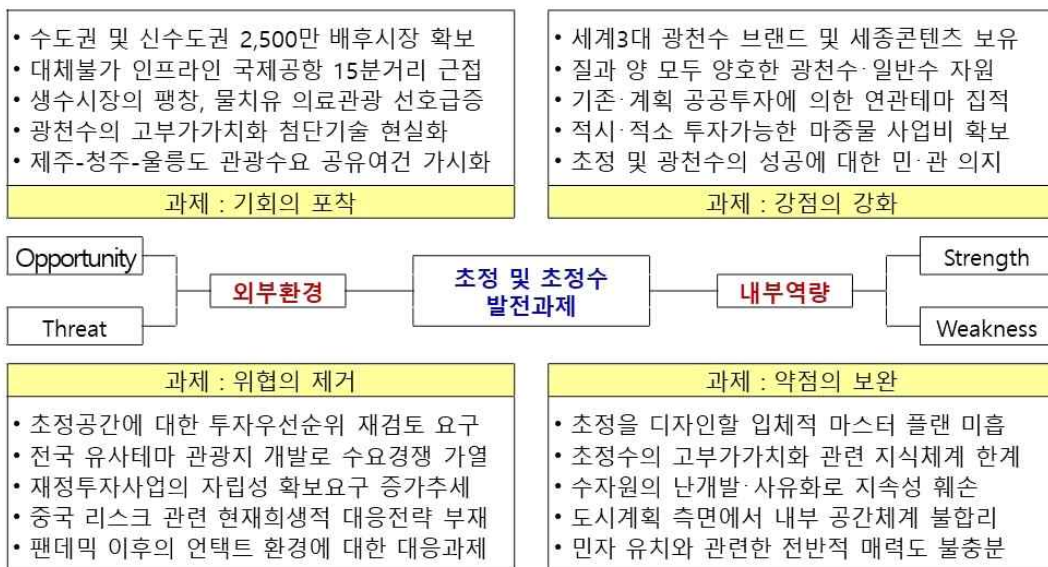
1. 미래비전 관점의 초정 평가

예상 대응과제	초정수의 기능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정수가 수사(修辭)만이 아닌 실제 인정할 만한 신체기능 활성화 효과를 갖도록 하는 방안 강력 추진 및 달성 - 첨단기술 접목에 의한 초정수의 기능수화 실현 - 초정수 브랜드 + 기능수화 기술의 결합으로 시장가치 창출
	공공 선제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의 물연구소 설치 및 Pilot plant 구축으로 기능수 테스트 - (실패시) 클러스터 기반시설로 흡수 / (성공시) 시장기회 선점
	관리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극적으로 민·관 거버넌스 기반 초정수의 공공재(公共財)화 달성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정기능수의 효능 및 민자 유치에 의한 초정단지 수익모델 달성 - 초정기능수 기반의 단지 조성으로 공간 치유기능 확보 - 독립상품으로서 초정기능수의 제조 및 국내·외 판매
	지속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활성화 및 공공투자 회수, 수익금의 지역지분 할애구조 구축
본 제안 기본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정 치유문화클러스터의 1차 성공 관건인 초정수의 기능수화를 위한 기술 소개와 그 사업추진 구상 제시를 통해 입법기구의 정책지원 요청 	

- 13 -

Ⅲ. 초정의 과제 / SWOT 평가

2. SWOT 평가



- 14 -

Ⅲ. 초정의 과제 / SWOT 평가

3. 미래비전 관점의 초정 진단

□ 평가결과로부터의 주요 시사점

□ 기본 대응방향

❖ 초정수의 현실 역량에 대한 객관적 점검	➔	❖ “탁월한 치유효과”의 실제 구현방안 강구
❖ 초정 콘텐츠의 차별적 경쟁력 제고수단	➔	❖ 초정수 기능수화를 경쟁력 기반으로 선택
❖ 초정 공공투자계획의 우선순위 합리화	➔	❖ 물연구소, 기능수 파일럿 플랜트 상위 배치
❖ 초정수 난개발 및 지속가능성 훼손 대응책	➔	❖ 민·관 거버넌스로 초정수 공공재화 추진
❖ 중국리스크 완화에 필요한 지역차원 합의	➔	❖ 초정콘텐츠에 합당한 유치 관광객 고급화
❖ 팬데믹 관련 언택트 환경의 영향력 평가	➔	❖ 관광객 밀도의 저하를 객단가 제고로 보완
❖ 초정 개발정책 및 계획의 시행착오 보정	➔	❖ 기존 기본계획 대체 실행 마스터플랜 수립
❖ 공공투자개발사업의 자립성 요구 부응	➔	❖ 공공의 공로지분을 전제한 수익모델 구축

- 15 -

IV. (예시)초정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모델

1. 초정수의 사업화 단계



- 16 -

IV. (예시)초정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모델

2. 초정수의 기능수화 방안

기술 검증	물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수 기술기업 유치, 입주사+초정관리주체 공동연구시스템 - 신규 기술개발 아닌 이미 완성된 기술의 검증 및 상품화 집중 - 연구소 및 연구소 성과는 초정관리주체가 공공적으로 관리 → 입주단계 부터 입주 및 지원조건으로 명시(사전 계약) - 1차적으로는 건강음용수에 집중하고, 의료적 성능은 중·장기 확보
	파일럿 플랜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시간내 상품화를 위하여 광천수연구소의 기술성과를 즉각 적용·시험할 수 있는 소형 시범생산공장 설치·운영(연구소 관할) - 기능수 기술을 자연초정수에 접목하여 개발한 건강증진기능을 갖는 “초정기능수”를 신속 생산하고 시장상대의 상품성 테스트
	추정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수 연구·생산동 : 총 2,402백만원(토지비 제외) - 건물 600㎡ 962백만원 / 공장 및 장비구축비 1식 1,440백만원)
초정 기능수의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랜트가 검증한 기능수 기술을 초정관리주체의 자체사업 또는 민간투자자(기술이전 조건 협약)를 통하여 상품화하는 대량 생산·판매체계 구축 - 단지내 광천수와 일반 자연수, 또는 양자 혼합의 고가 기능수 생산 	

- 17 -

IV. (예시)초정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모델

2. 초정수의 기능수화 방안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기능수 기술의 적용	스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정스파 사용 물의 수소수화로 음용이 아닌 접촉을 상품화 - 일반생수와 수소의 결합을 통하여 광천수 자원 절약효과 도모
	야외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수조나 대형 양식조에 수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 - 관광객에 대한 수소수 족욕 및 물놀이 서비스 제공
	실내 및 자연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아닌 공기에 직접 수소 발생장치 가동 - 초정공간 전체의 건강·힐링 이념 구현 및 차별적 브랜드화
응용 상품(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항산화 가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즉석 음용 수소수 제조 키트 - 초정수를 현재의 일화광천수처럼 기능수 상품으로 제조가능 • 맞춤형 제조에 의한 대형 커피점·음식점 등의 판매상품 • 항산화 기능이 극대화된 기능성 화장품 - 미스트, 클렌저 등 안티 에이징 용도 대상으로 프리미엄급 상품 개발 • 대형 아파트 단지의 가구별 수소수 음용이 가능할 수 있는 옵션 • 휴대 가능한 수소수 보관용기(발생장치 포함)의 명품화 및 패션화 	

- 18 -

IV. (예시)조정단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모델

3. 통합 사업목표

중·장기 통합 사업목표	지역친화 세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수익 시현으로 지자체, 주민 참여 모범적인 사업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도내 및 조정지역의 다양한 사업 지원 자금 확보 글로벌 사업 확장으로 충북도내 인재 육성 기회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의 교육분야 전환으로 추가 인재채용 및 교육기회 확대 조정외 물산업의 세계 중심 기지화: 기능수 및 치유수의 메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상장 추진 목표: 경영 5개년 이후 (2027년까지 목표)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의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자체 수익에 의한 조정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담보하고 향후 단지 투자재원 일부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광천수의 기능수화 성공시 3개년 공공재정투자 240억으로 「조정클러스터 10개년 마스터 플랜」 (5천억-1조원 규모) 상의 공공부문 필요재원(총사업비의 30% 이상) 자체 조달 가능 판단
	물 치유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수 성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물 치유 생태계 구축 공항기반 고급 수요자층 대상의 국제 의료관광휴양지 조성 자연공간(숲·수계)과 기능수화 기술 복합으로 물 치유 메카 지향

- 19 -

V. 정책건의

1. 입법기구에 대한 건의

- ❖ 한류 시대 세계적 문화자산 잠재력을 가진 조정 세종콘텐츠의 방치에 대한 국회 차원 관심
- ❖ 한글의 세계문화화 첫걸음인 훈민정음 복원에 대한 연구지원 및 「훈민정음법」의 조속 제정
- ❖ 「훈민정음법」에 훈민정음 기반 문화산업시스템 구축 및 재정조달에 대한 공공 지원사항 반영
- ❖ 조정 입지 훈민정음대답을 포함한 훈민정음특구 지정 및 조성의 국가 사업화 타당성 검토
- ❖ 조정수의 기능수화를 통한 자립적 조정 문화·관광생태계 조성 전략에 대한 국회의 지지

2. 조정훈민정음사랑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질문들

- ❖ 세종께서 조정에 2차에 걸쳐 120일을 머무셨고, 그때의 행궁이 복원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세종께서 조정행궁 체류시 직전 창제한 훈민정음을 더욱 가다듬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세종께서 조정에 머무시며 조정수를 이용해 안질환을 치료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스마트 폰 입력시 한자나 가나가 한글보다 7배 시간을 더 소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조정기능수화 및 수익화가 조정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 20 -

[토론문]

한글은 하늘이 내린 하나의 글

최홍길

서울선정고등학교 국어교사

발제자의 논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적합한 내용을 주제로 논지를 전개하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이 토론문에서는 그동안 필자가 관심을 갖고 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0년 경북 안동의 고가(古家)에서 세계 언어학사에 획을 긋는 책 한 권이 발견됨으로써 이후 훈민정음의 가치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보기 전까지는 창 의 문살에서 따왔다는 것과 같은 저급한 기원설에서부터 범어(梵語) 기원설, 신대(神代)문자 기원설 등의 수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발음기관 상형설로 정착되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초성에서는 상형과 가획의 원리를, 중성에서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를, 종성에서는 ‘종성부용초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글자의 운용 면에서는 병서와 연서, 합용, 방점을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후 훈민정음 서문과 용비어천가 일부를 학습하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으며 힘들어합니다.

발제문에서는 우리의 고유문자가 한민족을 넘어 인류사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임을 밝힌다고 술회한 뒤,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 몇 가지를 상술하였습니다. 창제의 이론적 배경과 창제 동기, 제자(制字)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조(聲調)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창제의 이론적 배경과 창제 동기에서는 각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서 이해도를 배가시켰습니다. 이론적 배경의 하나인 중국음운학에서는 세종께서 이 방면에도 깊은 조예를 나타냈다면 다섯 가지로 압축해 설명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래의 표에 나와 있듯이 한자의 소리 체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학문이 성운학(聲韻學)인데 성운학에서는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만 나누었지만, 해례본에서는 음절을 초성·중성·종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중국 성운학의 성모를 초성으로 봤고, 운모를 중성과 종성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입니다.

	음절		
중국 성운학	성모	운모	
훈민정음 해례본	초성	중성	종성

주지하다시피 중국어는 4성조, 베트남어는 6성조까지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눈’과 같은 일부 단어에서 장단음으로만 남아 있어서 성조는 사라졌습니다. 여섯 가지 의미로 나뉘는 베트남어 ‘ma’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기에, 초보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서’를 보면, 정음 28자로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내고,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두루 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슬기롭지 못한 이라도 열흘 안에 배울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학생들은 한국어 기초학습을 한 지 세 시간 정도 지나자 자기의 이름을 한글로 적으며 신기해했음을 기억합니다.

필자는 얼마 전에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아주머니들 50여 명에게 한국어 관련 설문을 했는데 한국어의 장점과 단점을 적으라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응답자들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시를 지을 때 아름답다, 깊은 정의 세계가 느껴진다, 어느 나라의 발음도 적을 수 있다, 색을 표현하는 말이 많아서 표현이 다양하다, 핸드폰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 매우 빠르다, 시각적으로 아름답다 등이었습니다. 컴퓨터에서도 입출력이 자유로운데다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현대인의 필수품인 휴대전화의 문자 전송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인지서에는 “정음 창제는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의한 것이 아니요, 자연의 이치에 의한 것이다.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아주 많으며, 사람의 힘으로 사사로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천지만물의 원리가 갖춰 있으므로 훈민정음의 창제가 인위적인 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담은 공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즉, 한글은 하늘이 내린 하나의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발제자의 제자 원리를 통독하면서 학생들에게 설명한 만한 많은 자료들을 발견한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원고의 서론에서 논의의 출발점을 “훈민정음 창제와 몇 가지 문제점을 고찰하여, 우리 고유문자가 인류사에 최고의 문화유산라는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음소문자라는 게 언급되었지만, ‘문자 발달사’를 추가적으로 곁들였다면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했을 법한데 그러하지 못한 게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언어학자들은 훈민정음이 <그림문자-단어문자-음절문자-음소문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발음기관의 모양이나 소리의 특성과 같은 음운적 자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만든 문자체계인 자질(資質)문자라고 강조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인류사에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유산인 훈민정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위용을 드러낼 훈민정음 탐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서 귀한 연구물을 더 살피고 숙지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겠습니다.

[부록1]

○ 훈민정음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8대 중점사항

1. **보존 및 세계화를 위한 시책논의** : 훈민정음의 세계화를 위한 방향성을 논의하고 올바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논의.
2. **기본계획의 필요성** : 그간 대한민국 정부는 한글 세계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제3차 국어발전 기본계획' 충실히 이행했으나, 이제는 훈민정음의 세계화를 위한 '훈민정음 기본계획'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3. **시행계획의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공공기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의 수립을 모든 기관에서 협조 할 필요성 논의.
4. **문화재적 측면의 훈민정음 보존방안** : 현재 훈민정음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시행령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관련 자료에 대한 소유권, 복원, 보존, 디지털화 등 산재한 문제에 대한 운영방안 및 보존방안 논의
5. **예산의 마련 및 집행** : 훈민정음은 국가의 자산이나 국민의 문화유산으로 분류된 현실에서 예산의 주축이 정부인지, 또는 국민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예산의 중심을 어디로 기준을 잡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
6. **민간단체의 역할** : 훈민정음을 보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확산 및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있어 민간의 예산 범위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함.
7. **표음문자의 중심적 역할** : 훈민정음은 인류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문자이며, 또한 표음문자의 중심이 되는 방안의 논의 필요성이 절실함.
8. **통합센터의 필요성** : 상기 거론된 7가지 중요정책에 있어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

○ 훈민정음 법 제정을 위한 분야별 추진 방안

구 분	추진 방안
보존 및 세계화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민정음의 보존 및 세계화 대책 마련의 시급 - 관련 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논의
기본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5년 기본계획의 마련 - 훈민정음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 필요
시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3년 훈민정음 창제 후 국가 주도의 발전계획 미비 - 발전과 육성을 위한 세부시행 연구의 필요성 논의 필요
문화재적 보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보유 중인 훈민정음 관련 사료의 문화재적 보호 - 훈민정음 관련 사료의 문화재로서의 보호 방안 논의
예산마련 및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민정음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예산 필요성 - 보존과 육성 세계화 등 훈민정음 관련 예산의 범위논의
민간단체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민간 주도하에 훈민정음 발전범위와 방안 논의 필요 - 민간,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
표음문자의 중심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음문자로서의 세계중심이 훈민정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 - UN이 인정하는 문자로서의 한국의 표음문자의 방향 제시
통합센터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 필요 -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등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논의

훈민정음 법 제정 촉구 이유 및 주요 내용

촉 구 이 유

훈민정음은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에야 글자를 이루는 원리로 인하여 무릇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에 관한 것을 표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훈민정음의 현대성은 빠르고 번쩍이는 빠른 활용성과 시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상상력의 불꽃이 번뜩이는 보편적이고 문화적이며 실용적인 문자로서의 장점을 지녔음.

이에 독창성과 생명력 있는 미의식과 자긍심이 담긴 우수한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 함으로써 미래에도 면면히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훈민정음 의 보존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훈민정음의 세계공용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북으로 분단된 한민족의 공통 문화자산인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문자를 보유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여 문자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민족의 영원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훈민정음의 원형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훈민정음이 표음문자로서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는 훈민정음의 보존 및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보존 및 세계적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훈민정음 보존 및 세계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제2항).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관련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보유 현황, 보존 상태, 보존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보전 및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제1항).
- 사. 국가는 훈민정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안 제9조제1항).

[부록4]

법률 제 호

(가칭) 훈민정음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전문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22. . .

발 의 자 :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제자와 창제연도 및 창제목적과 창제원리가 신뢰할 수 있는 문헌으로 현존하는 세계 유일한 문자이고, 경천애민 사상으로 왕이 친히 창제한 문자로서 기하학적이고 단순명료하며, 과학적이면서 내적 질서가 정연하고, 우주의 이치를 담은 선명한 글꼴 구조로 문자가 갖을 수 있는 모든 특성을 지닌 훈민정음의 원형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훈민정음이 표음문자로서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이란 세종대왕이 창제한 28자의 원형을 말한다.
2. “훈민정음 원형”이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가 기록된 ‘훈민정음해례본’의 내용을 말한다.
3. “표음문자로서 세계화”란 개짚는 소리, 닭의 울음소리,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까지 적을 수 있는 표음문자 원리를 활용하여 세계의 어느나라 말 이든 표기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홍보 및 보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훈민정음의 보존 및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훈민정음 보존 및 교육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보존 및 세계적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훈민정음 보존 및 세계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훈민정음관련 문화재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훈민정음 원리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훈민정음의 국외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훈민정음 기념절 제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훈민정음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훈민정음의 세계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 관련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의 보유 현황, 보존 상태, 보존 환경 등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이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설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민정음의 보전 및 세계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단체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훈민정음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훈민정음의 세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